

민원·안내실 비치용

2007년도  
농림사업안내서

2007.1

(마크) 농 림 부

# 차 례

##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 영농규모화사업 .....	1
○ 토양개량제보조사업 .....	3
○ 유기질비료지원사업 .....	4
○ 주요작물 원원종 및 원종생산사업 .....	5
○ 종자산업육성지원사업 .....	6
○ 신품종등록 품종개발비지원사업 .....	7
○ 해외품종보호 출원비지원사업 .....	8
○ 농기계 구입지원사업 .....	9
○ 농기계 임대사업 .....	10
○ 농기계 생산지원사업 .....	11
○ 농기계 보관창고설치사업 .....	12
○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지원사업 .....	13
○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지원사업 .....	14
○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지원사업 .....	15
○ 고품질쌀 브랜드육성사업 .....	16
○ 농지은행사업 .....	17
○ 마늘경쟁력제고사업 .....	20
○ 과수원 정비지원 사업 .....	22
○ 물류기기 공동이용사업 .....	23
○ 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	24
○ 산지유통 종합자금지원 .....	25
○ 채소 수급안정사업(시설) .....	27
○ 인삼계열화사업 .....	28

- 농산물 가공원료 구매자금지원사업 ..... 29
- 농산물출하촉진자금지원 ..... 30
- 직거래사업 ..... 32
- 농축산물 자조금사업 ..... 33
- 축산자조금조성사업 ..... 34
- 채소 수급안정사업(노지) ..... 35
- 원예브랜드사업 ..... 36
- 동절기 수급안정사업 ..... 37
-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 ..... 38
- 농산물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 ..... 39
- 우수 농산물지원사업 ..... 40
- 시설현대화사업 ..... 41
- 우수농산물 관리제도(GAP) 운영 ..... 42
- 농산물 유통전문교육 ..... 44
- 과실 생산·유통 지원사업 ..... 45
- 과수 우량묘목 생산지원사업 ..... 46
- 과원 영농규모화사업 ..... 47
- 과수 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 49
- 과원 폐업지원사업 ..... 50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제3권**

-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 51
- 사료산업 종합지원사업 ..... 53
-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 ..... 55
- 마필산업육성사업 ..... 57
-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 59
- 가축개량사업 ..... 61

- 자연순환농업활성화지원사업 ..... 64
- 양봉산업육성사업 ..... 65
- 도축·가공업체 시설 및 운영지원사업 ..... 66
-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 ..... 67
- 산지 축산물 생산·유통지원사업 ..... 68
- 가축계열화사업 ..... 69
- 우수 축산물 브랜드인증사업 ..... 71
- 축산물 브랜드 컨설팅지원사업 ..... 72
- HACCP컨설팅지원사업 ..... 73
- 가축공제사업 ..... 74
- 학교 우유급식사업 ..... 75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제4권**

- 친환경 농업지구조성사업 ..... 76
-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 ..... 77
- 농업종합자금지원사업 ..... 79
- 농업경영체 정보시스템구축사업 ..... 80
- 농업인 홈페이지 운영활성화 지원 ..... 81
- 농업인 정보화 교육사업 ..... 82
- 농업·농촌정보화 선도자선정 및 활용사업 ..... 83
- 농림기술개발사업 ..... 84
- 새기술보급시범사업 ..... 86
- 농업인 전문교육사업 ..... 88
-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 89
- 농업인턴제사업 ..... 90
- 창업농 후견인제사업 ..... 91
- 우수 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 ..... 92

○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지원사업 .....	93
○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사업 .....	94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사업 .....	95
○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	96
○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	97
○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사업 .....	98
○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	99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	100
○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사업 .....	102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	104
○ 농촌경관직접지불사업 .....	105
○ 농업인 재해공제사업 .....	106
○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경감지원사업 .....	107
○ 농어업인의 국민연금보험료지원사업 .....	108
○ 취약농가 인력지원(영농·가사 도우미) .....	109
○ 농어촌관광 휴양자원개발사업 .....	110
○ 관광농원사업 .....	111
○ 농어촌 민박사업 .....	113
○ 한계농지 정비사업 .....	114
○ 농·축산 경영자금지원 .....	115
○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 .....	116
○ 폐비닐 수거비지원사업 .....	117
○ 산림경영계획사업 .....	118
○ 사방사업 .....	119
○ 산불진화 진입도로개설사업 .....	120
○ 단기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사업 .....	121
○ 조경수·분재생산사업 .....	122

- 산림복합경영사업 ..... 123
-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 ..... 124
-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 125
- 임산물 생산자조직 육성사업 ..... 126
-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사업 ..... 127
- 산림사업 종합자금지원사업 ..... 128
- 산림 바이오매스사업 ..... 129
- 산림경영기술지도사업 ..... 130
- 사유림협업경영사업 ..... 131
- 해외조림투자지원사업 ..... 132
- 조림·숲가꾸기·묘목생산사업 ..... 133
- 식물자원 보전관리사업 ..... 134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제5권**

- 향토산업육성사업 ..... 135
-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 ..... 136
-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 137
-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건립 ..... 138
- 농촌전통테마마을육성사업 ..... 140
-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 142
- 묘목생산기반 조성사업 ..... 144
-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 145
-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 146

## 영농규모화사업

### □ 사업목적

- 농가의 경영규모 확대와 농지의 집단화를 통한 쌀산업의 경쟁력 제고
- 농가의 고령화 등에 대비한 젊고 유능한 쌀 전업농의 농촌정착 유도

### □ 지원대상

- 농지매매사업 : ①쌀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만 60세 이하의 논 경영규모가 1.5ha이상인 자. ②쌀전업농육성대상자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만 55세이하의 벼재배 경력 3년이상인 농업인으로서 논 경영규모가 2.0ha이상 인자. 다만, 농업계학교 졸업자, 경종분야 후계농업경영인, 만 40세 이하 농업인은 경영규모 1.5ha이상인 경우 지원 가능, 농업후계인력이 있는 경우는 만 60세 이하인 농업인. ③벼를 주작목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논 경영규모 5.0ha이상), 농업회사법인(논 경영규모 10.0ha이상). ④기타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제주도에 한함)
- 농지임대차사업 : ①쌀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만 62세 이하의 논 경영규모가 1.5ha이상인 자. 농지매매사업 ②③④와 지원 대상자가 동일한 자. ⑤창업농으로 선정된 후 5년이내의 자
- 농지교환·분합사업 : 농지교환·분합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경지정리 집단환지청산금 지원대상자

### □ 사업내용

- 농지매매사업 : 비농가, 전업(轉業)·은퇴 또는 영농규모를 축소하는 농가와 비농업법인 소유의 농지를 매입하여 이를 쌀전업농육성 대상자 등에게 매도
- 농지임대차사업 : 비농가, 전업·은퇴 또는 영농규모를 축소하는 농가 등으로부터 농지를 장기임차하여 이를 쌀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장기 임대
- 농지교환·분합사업 : 농지교환·분합시 교환분합 차액 지원, 경지정리 집단환지시 청산금 지원

자금유형

- 사업량 : 8,392ha, 사업비 : 340,000백만원(융자 100%)

지원조건

- 농지매매사업 : 지원규모 20ha, 연리 2.0%, 연령에 따라 15~30년  
균분상환
- 농지임대차사업 : 지원규모 30ha, 무이자, 5~10년 원금 균분상환
- 농지 교환·분합사업 : 교환·분합하는 농지가격 차액 및 청산금 납  
부해당액, 연리 2.0%, 10년이내 원금 균분상환
- 지원상한 : 제곱미터 당 답 9,075원, 전 10,587.5원 (지원상한 범위  
내에서 10% 자부담)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농산경영과 (☎ 02-500-1777, 1771)
- 한국농촌공사 농지은행사업처 (☎ 031-420-3380, 3366)

신청기관 : 한국농촌공사



## 토양개량제 보조사업

### □ 사업목적

-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개량제(규산, 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 □ 지원대상

- 규산 : 유효규산함량이 130ppm미만인 규산 부족 논 및 화산회 토양의 밭
- 석회 : pH 6.5미만의 산성 밭 및 중금속 오염농경지

### □ 사업내용

- 유효규산함량 부족 논과 산성 밭에 규산·석회를 시용하여 토양개량

### □ 지원조건

- 국고보조 80%, 지방비 20%

### □ 사업주관기관 및 시행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농협중앙회(지역농협)

### □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식량정책국 친환경농업정책과(☎ 02-500-1805~6)
- 시·도 : 농정국 친환경농업과, 농산(유통)과, 농정과(특·광역시 : 농정과)
- 시·군·구 : 친환경농업과, 산업과·농정과(산업계)

### □ 신청기관

- 지역농협장이 읍·면·동 토양개량제 공급기본계획에 의거 4년1주기 공급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량 신청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사업목적

-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친환경농업을 정착시켜 지속가능한 농업 추진

지원대상

-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으로서는 유기질비료를 직접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
- 지원대상 비종
  - 유기질비료 :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 부산물비료 : 퇴비·그린(1급)퇴비

사업내용

- 농협중앙회에서 선정한 생산업체가 공급하는 지원대상 비종의 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보조)
- 비종별 지원단가
  -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및 퇴비 : 포대(20kg)당 700원
  - 그린(1급)퇴비 : 포대(20kg)당 800원

자금유형

사업량	사업비(예산안)			
	계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1,200천톤	42,000백만원	42,000	-	-

지원조건 : 국고보조 100%

사업주관기관 : 농협중앙회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식량정책국 친환경농업정책과(☎02-500-1807,1813 Fax 507-2096)
- 농협중앙회 : 자재부(☎02-2080-6401, 6407, Fax 2080-6400)
- 지역농협·품목조합 : 자재담당

신청기관

- 농업인이 구입희망업체, 비종별 희망수량 등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지역농협에 신청

## 주요작물 원원종 및 원종 생산사업

### 사업목적

- 벼, 보리, 콩 등 주요농작물에 대한 원원종 및 원종 생산지원으로  
우량 보급종자의 안정적 지원

###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봄감자 원종 채종농가)

### 사업내용

- 원원종 및 원종 생산에 소요되는 인부임, 재료비 등 보조

### 자금유형

- 사업량 : 249ha
- 사업비 : 2,901백만원(국고보조 2,901백만원)

### 지원조건

- 사업비 : 국고보조 100%

###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국립종자관리소 종자유통과(☎ 031-467-0130~5)

###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국립종자관리소 종자유통과
- 각도 농업기술원 및 원종장  
(감자원종 농가망실 위탁재배 사업 담당기관은 강원도감자원종장)

### 신청기관

- 농림부 국립종자관리소(강원도감자원종장 : ☎ 033-647-5961)

## 종자산업 육성지원 사업

사업목적

- 종자산업육성을 위해 종자의 증식·판매·수출단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함으로써, 종자산업을 농업분야의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으로 육성

지원대상

- 종자산업법 제137조에 의해 등록된 종자업자

사업내용

- 개발된 우수품종이 농업인에게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보급 및 판매지원
- 우수품종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종자업체를 대상으로 증식·채종·수매·가공비를 용자 지원
- 신품종 개발능력 향상을 위한 종자 품질관리 및 가공시설 지원

자금유형

지원대상	사 업 비					지방비	자부담
	사업비 합계	예 산 액 (농안기금)			용자		
		계	보조	용자			
종자업체	60	60	-	60	-	-	

지원조건

- 용자조건 : 연리 3%, 2년이내 상환
- 기준사업비 : 업체당 20억원 이내
- 경영우수업체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사업비 : 업체당 10억원 이내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사업담당부서 : 농생명산업정책과(02-500-1795)

신청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본사(02-6300-1152) 및 지사

## 신품종등록 품종개발비 지원사업

- 사업목적 : 개인육종 활성화를 통한 국내 육종의 저변확대
  
- 지원대상 : 개인육종가 및 소규모 법인체(상시근로자 20인 이하)
  - \* 제외대상 : 공무원이 직무육성을 통해 육성한 품종을 신청하는 경우
  
- 사업내용
  - 신품종을 국내에 품종보호 출원하여 등록한 경우 품종당 500만원의 국고보조금 지원 (1인당 연간 5품종이내 지원)
  
- 자금유형 : 사업량 40품종, 사업비 200백만원, 민간경상보조
  
- 지원조건 : 품종당 500만원 정액보조
  
- 사업주관기관 : 국립종자관리소
  
- 사업담당부서 및 신청기관
  - 국립종자관리소 품종심사과 (☎031-467-0291)

## 해외 품종보호출원비 지원사업

- 사업목적 : 개인육종 활성화를 통한 국내 육종의 저변확대
  
- 지원대상 : 개인육종가 및 중소기업(상시근로자 200인 이하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 \* 제외대상 : 공무원이 직무육성을 통해 육성한 품종을 신청하는 경우
  
- 사업내용
  - 신품종을 해외에 품종보호 출원하여 등록한 경우 품종당 500만원의 국고보조금 지원 (1인당 연간 3품종이내 지원)
  
- 자금유형 : 사업량 5품종, 사업비 250백만원, 민간경상보조
  
- 지원조건 : 품종당 500만원 정액보조
  
- 사업주관기관 : 국립종자관리소
  
- 사업담당부서 및 신청기관
  - 국립종자관리소 품종심사과 (☎031-467-0291)

# 농기계구입지원사업

## □ 사업목적

-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농업구조개선과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가의 농업기계 구입부담 경감

## □ 지원대상자

- 농업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농협농업기계은행, 지역농협 및 미곡종합처리장운영자(해당 기종에 한함). 다만, 벼도정수율자동판정기 및 벼품위자동판정기, 곡물냉각기의 지원대상자는 미곡종합처리장운영자에 한함

## □ 지원조건

- 지원금리 : 연리 3.0%(1년거치 4~7년 균분상환)
- 농기계별 지원기준
  - ① <기준금액의 90% 해당액>
    - 신기술농업기계(신규공급일로부터 2년이내), 공동이용목적으로 구입하는 농업기계, 발작물·축산전용, 친환경 및 에너지절감형농업기계, 경제형 농업기계(트랙터, 콤팩트, 승용이앙기), 영농종사의무자가 구입한 농기계
  - ② <기준금액의 80% 해당액> : 벼직파재배용 농업기계
  - ③ <기준금액의 50% 해당액> : 부속작업기
  - ④ <기준금액의 20% 해당액> : 선택품
  - ⑤ <기준금액의 70% 해당액> : ①②③를 제외한 농업기계

## □ 사업담당부서

- 중앙 : 농림부 식량정책국 농산경영과(02-500-1772, 1776)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 및 자재부(02-2080-6815, 6434)
- 시·도 : 농협 시·도 지역본부 여신(정책)팀 및 자재팀, 시중은행지점(도)
- 시·군 :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시중은행지점(시·군)

## □ 참조사항

- 1천만원 미만 농기계 구입지원은 정책자금이차보전사업에서 지원
- 1천만원 이상 농기계 구입지원은 농업종합자금사업에서 지원

## □ 신청기관 : 지역농협

## 농기계 임대사업

### □ 사업목적

-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 중심으로 농기계를 임대해 줌으로써 농기계 구입부담을 덜어주고 농기계 이용률 제고

### □ 지원대상

- 농업인, 쌀전업농, 작목반 등 농기계공동이용조직, 과수주산지역 조합 및 영농조합법인

### □ 사업내용

- 시장·군수는 정부 자금 및 자체 자금을 이용하여 임대용 농기계를 구입한 후 농업인 등 지원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해 줌
  - 구입대상 임대농기계 및 임대료는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
  - ※ 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비를 직접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임대사업을 희망하는 시·군에게만 임대농기계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임
- 농업인 등이 시·군에 임대농기계 사용을 신청하면, 시장·군수는 신청 우선순위, 작업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농기계를 임대해줌

### □ 지원조건

- 사업량 : 20개소(시·군)
- 개소당 사업비 : 500백만원(국고 250백만원, 지방비 250백만원)
  -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설치비 포함
- 지원조건 : 국고보조 50%, 지방비 부담 50%
- 총 사업비 : 10,000백만원(국고보조 5,000백만원, 지방비 5,000백만원)

□ 사업주관기관 : 시 · 군 · 구

□ 사업 담당부서 : 농림부 농산경영과 (☎02-500-1769)

□ 신청기관 : 시 · 군 · 구



## 농기계생산지원사업

### □ 사업목적

- 계절별 사용 농기계의 생산비축에 소요되는 원자재 구입자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농기계 적기공급 및 가격 안정 도모.
- 농업시설 기자재의 자동화, 첨단화에 필요한 기자재의 생산시설설치자금을 지원하여, 우량 국산기자재의 생산 보급 촉진

### □ 지원대상자

-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지원 : 농기계생산업체
- 시설농업기자재생산지원 : 농업용기계 및 시설기자재생산업체

### □ 지원조건(농업종합자금사업에서 지원)

-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지원
  - 지원규모 : 농기계 생산비축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융자지원
  - 지원조건 : 연리 3%, 1년이내 상환
- 시설농업기자재생산지원
  - 지원규모 : 소요사업비의 80%이내
  - 지원조건 : 연리 3%, 3년거치 10년 균분상환

### □ 배정기준

-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지원
  - 종합형업체(5대업체)와 중소형업체로 구분하여 70% : 30%로 지원
  - 중소형업체는 최근 2년간 년평균매출액이 10억원이상인 업체에 지원
- 시설농업기자재생산지원
  - 기업구조, 재무능력, 기술 및 경영능력을 감안하여 지원

### □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협동조합과(02-500-1698) 농산경영과(02-500-1772, 1776)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 농업종합자금추진단(02-2080-6815)

### □ 사업주관기관 및 신청기관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02-2140-7900)

# 농기계보관창고 설치사업

사업목적

- 농기계를 안전하게 보관하여 고장을 예방하고 내용연수를 연장시켜 이용율을 증진(부지구입비는 제외)

지원대상자

- 일반농가 농기계보관창고 : 대형농기계(트랙터, 콤바인 등) 보유 농가
-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 : 마을내 5호 이상의 농기계 공동보관농가
- 사후봉사업소 농기계보관창고 : 대형·중형·소형농기계 사후봉사업소
- 중고농기계상설판매장 농기계보관창고 : '02년~'03년동안 지원 설치한 중고농기계 상설판매장

지원규모

- 일반농가 농기계보관창고 : 10~30평 범위내에서 지역실정에 적합한 규모로 설치
-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 : 40~100평 범위내에서 지역실정에 적합한 규모로 설치
- 사후봉사업소 및 중고농기계상설판매장 농기계보관창고 : 50~200평 범위내에서 지역실정에 적합한 규모로 설치

지원조건(농업종합자금에서 지원)

- 지원금리 : 연리 3.0%(3년거치 10년 균분상환), 국고융자 70%, 자부담 30%
- 개소당 사업단가

구 분	사업규모	계	국고융자	자부담
일반농가농기계보관창고	20평	11,600천원	8,120	3,480
사후봉사업소농기계보관창고	100	58,000	40,600	17,400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	60	35,000	24,500	10,500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협동조합과(02-500-1698) 농산경영과(02-500-1772, 1776)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 농업종합자금추진단(02-2080-6815)

신청기관 : 지역농협

## 농기계수리용 부품·장비지원사업

### □ 사업목적

- 농기계 사후봉사업소로 하여금 대형정밀 농기계의 수리봉사에 적합한 수리용시설·장비를 확보토록 하여 신속한 수리봉사 촉진
- 부품관리 전산화지원으로 신속한 수리용 부품 공급체계 확립

### □ 지원대상자

- 수리용부품 : 부품센터(농협 및 제조업체등), 대형·중형·소형사후봉사업소
- 수리장비 : 대형·중형·소형 사후봉사업소(사후봉사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포함),

### □ 지원조건(정책자금이자보전에서 지원)

- 지원금리 : 연리 4.0%(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 지원한도

- 수리용부품

농협부품센터	업체 및 권역 부품센터, 부품종합 판매점	중고농기계 상설판매장	수리용 중고농기계	사후봉사업소		
				대형	중형	소형
백만원 2,000	700	500	50	600	500	300

※ 수리용 중고농기계 : 수리용부품으로 활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중고농기계

- 수리용 장비

사후봉사업소			중고농기계 상설판매장 및 폐농기계처리장
대형	중형	소형	
500 백만원	400	300	300

### □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협동조합과(02-500-1698) 농산경영과(02-500-1772, 1776)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 농업종합자금추진단(02-2080-6815)
- 시·도(시·군·자치구) : 산업(농산, 농정)과, 농협 : 시·도(시·군)지부, 지역농협

### □ 사업주관기관 및 신청기관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02-2140-7900)

##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

사업목적

- 벼의 수집·건조·저장·가공 및 포장과정을 일관 처리함으로써 수확 후 관리 비용절감과 미질 향상 및 산지 쌀 유통구조 개선

지원대상

- 미곡종합처리장(RPC) 운영자(통합RPC, 조합공동사업법인 포함)

사업내용

- 미곡종합처리장에 농가벼 매입 및 쌀 품위유지를 위한 건조·저장 시설을 보조지원

자금유형

사업량(개소)	사업비(예산안)			
	계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110	61,500백만원	25,800	6,150	29,550

지원조건

구분	지원단가	국고보조	지방비	자담
통합RPC시설	900백만원	450(50%)	90(10%)	360(40%)
증설·위성시설	550백만원	220(40%)	55(10%)	275(50%)
저온창고	300백만원	150(50%)	30(10%)	120(40%)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식량정책국 소득관리과(☎02-500-2112~3)
- 시·도 : 농산과(또는 농정과, 농산유통과 등)
- 시·군·자치구 : 산업과(또는 농정과 등)

신청기관 ; 시·군·구

##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사업

### □ 사업목적

- RPC의 농가벼 매입을 통해 농가벼 판로를 보장하고 산지 쌀 유통 기능을 활성화하여 생산농가의 소득제고

### □ 지원대상

- 미곡종합처리장(RPC) 운영자(통합RPC, 조합공동사업법인 포함)

### □ 사업내용

- 미곡종합처리장 등에 농가벼 매입을 위한 자금 지원

### □ 자금유형

- 연간 9,184억원 융자지원(RPC 경영평가 결과 및 수확기 벼 매입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원)

### □ 지원조건

- 지원기간 및 지원금리 : 1년이내 상환, 0~2%
  - RPC별 당해연도 지원총액의 1.5배 이상을 당해연도 수확기에 의무적으로 매입하여야 함

### □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 □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식량정책국 소득관리과(☎02-500-2112~3)
- 농협중앙회 : 양곡부(☎02-2080-6302~3), 시·도 지역본부 및 시·군지부
- 기타 농업정책자금(RPC 벼 매입특별자금) 대출취급기관

### □ 신청기관

- 별도 시달하는 지원기준 등에 따라 농협중앙회, 대한곡물협회, 한국양곡가공협회, RPC협의회 등을 통하여 신청

##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

### 사업목적

- 우수 브랜드 경영체를 중심으로 생산단계에서 수확후 관리 및 유통 단계까지 종합적 관리를 통해 우리 쌀의 품질경쟁력을 강화

### 지원대상

- 규모화된 사업법인형태의 쌀 브랜드경영체
  - 시장·군수가 주도하여 결성한 사업법인형태의 규모화 된 쌀 브랜드 경영체(공동사업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역농협+지자체+농업인+유통업체등이 출자하여 결성한 법인, 기타 법인체 등)

### 사업내용

- 우수브랜드 경영체에 고품질 가공·품질고급화 시설현대화 자금 및 컨설팅, 농가조직화 교육·홍보비 지원

### 자금유형

- 사업량 : 8개소,
- 사업비 : 국고보조 72억원(시설현대화 64, 교육·홍보 8)
  - 시설현대화 : 개소당 2,000백만원(국고 800, 지방비 400, 자담 800)
  - 교육·홍보 : 개소당 200백만원(국고 100, 지방비 100)

### 지원조건

- 브랜드경영체 시설현대화 : 국고보조 40%, 지방비 20, 자담 40  
브랜드경영체 교육·홍보·컨설팅 : 국고 50%, 지방비 50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소득관리과 (☎02-500-2115)
- 시·도 : 농산과(농정과, 친환경농업과, 농정유통과 등)
- 시·군 : 농정과(산업과 등)

### 신청기관 : 시·군·구

# 농지은행사업

## 1. 농지임대수탁사업

### □ 사업목적

-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자경하지 못하는 농지 등을 임대수탁 받아 전업농가 등에 장기 임대하여 규모화 촉진, 농지의 효율적 이용

### □ 사업내용

#### ○ 임대수탁대상농지

-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 또는 사용대가 가능한 농지
- 농지법 시행일('96.1.1)이전에 취득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 임대위탁 신청방법 : 한국농촌공사 본사·도본부·지사

- 임차인 선정 기간 : 2개월 이내

- 수탁기간 : 5년 이상

- 임차료 결정

- 당해 농지 조사 임차료 수준 등 고려 임차인과 협의 결정

- 임대수탁수수료 : 임차료의 8~12%(수탁농지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 □ 사업담당부서 : 한국농촌공사

- 본 사 : 농지은행사업처 ☎031-420-3231

- 각 도본부 : 농지은행팀

- 시·군 관할지사 : 농지은행팀 ☎1577-7770

### □ 신청기관 : 한국농촌공사

## 2. 농지매도수탁사업

### □ 사업목적

- 농지 매도를 희망하는 자의 농지를 수탁 받아 전업농 등에 매도함으로써 농지 유통화를 촉진하고, 전업농 등의 경영규모 확대, 농지의 효율적 이용

### □ 사업내용

- 매도수탁대상농지
  - 농지소유자가 매도를 희망하는 농지
    - ※ 처분의무통지를 받은 농지를 농지은행과 매도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체결기간동안 처분명령 유예(농지법 제11조의2)
- 매도위탁 신청방법
  - 농지소유자는 본인이 원하는 한국농촌공사(본사·도본부·지사)에 신청
- 매입자 선정 기간 : 6개월 이내
- 매매가격 결정
  - 공시지가, 실거래가 등을 참고로 위탁자와 협의 결정
  - 매도위탁 기간중 변경 가능
- 매도수탁 수수료 : 매매가격의 0.6~0.9%(매매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

### □ 사업담당부서 : 한국농촌공사

- 본 사 : 농지은행사업처 ☎031-420-3251
- 각 도본부 : 농지은행팀
- 시·군 관할지사 : 농지은행팀 ☎1577-7770

### □ 신청기관 : 한국농촌공사



### 3.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 □ 사업목적

- 경영위기 농가의 소유 농지를 매입하여 부채를 상환케 하고, 매입 농지는 당해 농가에 임대한 후 임대기간중 환매권을 보장하여 경영회생 지원

#### □ 지원대상자

- 한해·수해 등 농업재해로 농가 피해율이 이상 50% 이상인 농업인
- 연체중인 농가 채무액이 50백만원 이상인 농업인

#### □ 사업내용

- 농지등 매입
  - 매입대상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
  - 매입가격 : 농지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
- 매입 농지등 임대
  - 임대대상 : 소유 농지등을 공사에 매도한 당해 농가 농업인.
  - 임대기간 : 5년(평가를 통해 3년이내 연장 가능)
  - 임대료 : 당해농지등 매입가격에 1% 범위내에서 차등요율제 적용
- 농지등 환매
  - 환매권자 : 공사에 매도한 농가의 매도당시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
  - 환매기간 : 임대기간(임대기간을 연장한 경우는 그 연장한 기간)
  - 환매가격 : 농지는 감정평가업자가 환매당시 평가한 감정평가 가격

#### □ 사업담당부서 : 한국농촌공사

- 본 사 : 농지은행사업처 ☎031-420-3358
- 시·군 관할지사 : 농지은행팀 ☎1577-7770

#### □ 자금유형 : 사업량 372ha 사업비 566억원, 농지관리기금

#### □ 신청기관 : 한국농촌공사

## 마늘경쟁력 제고 사업

### □ 사업목적

- 마늘산업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종구갱신 및 생산기계화를 통해 생산성 증진 및 품질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내마늘산업의 경쟁력 제고
- 마늘 긴급수입제한조치 종료 후 수입증가로 피해가 예상되는 경쟁력 열위농가에 대해 작목전환 기회부여

### □ 지원대상

#### (종구갱신)

- 마늘주산단지내 900평이상 마늘재배 농가를 우선하여 재배규모 범위내에서 1회만 지원

#### (생산 기계화)

- 공동이용 : ① 지방자치단체 ② 농협조합 ③ 영농조합법인 ④ 작목반 등
- 개별이용 : 마늘재배 농가중 마늘생산 농기계구입 희망농가

#### (작목전환)

- '05년 마늘작목전환사업으로 “마늘 작목전환약정”을 체결하고 약정 내용을 이행한 농가

### □ 사업내용

#### (종구갱신)

- 주아를 자가채종하여 종구를 생산하는 농가에 종구생산 장려금지원

#### (생산 기계화)

- 생력기계화 및 일관기계화 촉진에 필요한 마늘생산 농기계 보조지원

#### (작목전환)

- 마늘이외 작목으로 전환 및 휴작하는 경우 농가에게 작목전환 및 휴작 자금 지원

자금유형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사업비 합계	예산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용자		
계		5,047	2,657	2,657	-	1,520	870
종구갱신	250ha	2,000	1,200	1,200		800	
생산기계화	1,300대	2,484	894	894		720	870
작목전환	308ha	563	563	563			

지원조건

(종구갱신)

- 지원기준 : 국고보조 60%, 지방비보조 40%
- 지원단가 : 800천원/10a(주아과종면적 기준)

(생산 기계화)

- 공동이용
  - 지방자치단체 : 국고 50%, 지방비 50%
  - 농협 등 : 국고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 개별이용 : 국고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작목전환)

- 지원단가 : 약정당시 마늘재배면적 기준, 매년 183만원/ha(183원/m<sup>2</sup>)  
씩 3년간 지급(3년간 합계 550만원 수준)
- 지원기준 : 국고보조 100%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채소특작과(☎500-1861~2)
- 시·도 : 농산유통과(농정과, 원예유통과, 유통특작과 등)
- 시·군·자치구 : 산업(농정·농산)과

신청기관 : 시·군·구

## 과수원정비지원사업

### □ 사업목적

- 과실류 수입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경쟁력이 낮아 폐원을 하고자 하는 과수원에 대해 정비지원을 함으로써 국내과수산업의 경쟁력제고
- 사과·배 농가에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 과수 병의 조기 박멸로 안전영농 도모 및 국산과실의 경쟁력제고

### □ 지원대상

- 사과·배·포도·단감·감귤 등의 과수원중 방치과원, 병해충발생과원, 재배기술·생산성·경영능력 등이 낮은 과수원

### □ 사업내용

- 지원대상 과수원의 과수 절단, 굴취 및 과원 원상복구 등에 소요되는 실작업비를 지원
  - 과종별·시설별 기준단가(6~9백만원) 이하의 실작업비 지원
- '07 사업비

(단위 : ha, 백만원)

사업량	사 업 비					지방비	자부담
	사업비 합 계	예산액			용 자		
		계	보 조	용 자			
800	8,522	4,261	4,261	-	4,261	-	

###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과수화훼과(02-500-1876/7)

□ 신청기관 : 시·군·구

## 물류기기 공동이용사업

### □ 사업목적

- 파렛트, 플라스틱상자 등 물류기기 공동이용을 통해 농산물의 물류 규모화 및 하역기계화를 촉진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농산물을 적재함(탑) 차량으로 운송하여 농산물 안정성 및 상품성 제고

### □ 지원대상

- 지원대상 품목 : 원예농산물
- 지원대상 : 지역농협, 작목반, 영농조합 법인, 농업회사법인, 산지유통인

### □ 사업기간 및 방법

- 사업기간 : '00년 ~ 계속
- 지원방법 :
  - 물류기기이용 : 파렛트/플라스틱상자를 임차하여 출하하는 경우 임차료 60% 보조
  - 탑 차량개조 : 광폭차량(파렛트 2열적재가 가능한 45톤 이상 차량)을 적재함(탑) 차량으로 개조 하는 경우 개조비용을 50% 보조

### □ 사업내용

- 사업비 : 9,495백만원
- 지원형태 : 민간보조(국고 50~60%, 자부담 50~40%)
- 사업시행 주체 : 농협중앙회

### □ 사업주관기관 : 농협중앙회

### □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유통정책과 (02-500-1823~4)

- 농협중앙회 산지유통부 물류관리팀 (02-2080-6268), 지역본부, 시·군지부

### □ 신청기관 :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 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 □ 사업목적

- 산지유통전문조직 등 생산자조직의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를 유도하고, 농산물을 규격 상품화함으로써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물류비용을 절감하여 우리농산물의 경쟁력을 제고

### □ 지원대상

- 지원 대상품목 : 원예농산물
- 지원대상 : 산지유통전문조직, 공동마케팅조직, 지역농협, 영농조합 법인, 농업 회사법인, 작목반, 산지유통인

### □ 사업기간 및 방법

- 사업기간 : '84년 ~ 계속
- 지원방법 : 농산물을 표준규격출하는 경우 포장재비 및 공동선별비 국고보조
  - 포장재비 지원 : 농산물을 표준규격으로 출하하는 경우 포장재비 10~40%보조
  - 배추·무 포장유통지원 : 배추·무를 표준규격으로 공영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경우 포장재에 따라 60~90%, 기타출하처에 따라 40%보조
  - 공동선별비 지원 : 산지유통전문조직 및 공동마케팅조직이 농산물표준규격으로 공동선별, 공동계산, 공동출하하는 경우 공동선별비 30~50% 보조

### □ 사업내용

- 사업비 : 45,873백만원
- 지원형태 : 민간보조(국고 10~90%, 자부담 90~10%)
- 사업시행 주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 사업주관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 □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유통정책과 (02-500-1823~4)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팀 (031-446-0126), 지원 품질관리과, 시·군출장소
- 농협중앙회 산지유통부 물류관리팀 (02-2080-6268), 지역본부, 시·군지부

### □ 신청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

# 산지유통종합자금사업

## □ 사업목적

- 우수조직 중심으로 유통종합자금을 집중지원하고 사업평가를 통해 경쟁체제 도입,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유통효율화를 유도함으로써 산지유통의 핵심체를 육성
- '07년부터 개별 품목단위 지원에서 우수조직에 대한 종합지원방식으로 전환하고 관련자금을 통합 운용함으로써 사업간 연계성을 강화
  - ※ 「산지유통종합자금지원사업」은 '06년까지 산지에 계약재배자금, 선도금 등의 용도로 각각 분산 지원하던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시설채소약정출하사업, 과실수급안정(계약출하)사업을 '07년부터 종합자금 지원방식으로 전환함.

## □ 지원대상

- 대상조직
  - (산지유통활성화) 광역합병조합, 지역조합, 품목조합, 품목조합연합회, 조합공동사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상법상 법인(농업법인들이 공동출자한 법인에 한함),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농협연합사업단 등
  - (시설채소약정출하) 대상품목을 취급하는 지역농협 또는 품목조합, 영농조합법인
  - (과실수급안정사업) 전국단위 품목단체에 가입한 조합

## □ 사업내용

- 산지유통주체들의 원료확보에 필요한 운영자금지원

구 분	자금 용도	지원 조건	
산지유통 활성화 사업	①공동마케팅조직	○선도금, 계약금, 매취자금, 운전자금, 시설개보수 등	○3년, 1%
	②산지유통전문조직	○선도, 계약금, 매취자금, 운전자금, 시설개보수 등	○3년, 1~3%
	③산지유통일반조직	○선도금, 계약금, 매취자금	○1년, 3%
수급 안정 사업	①시설채소약정출하	○약정이행 보증금(총 약정금액의 80%), 제비용(20% 이내)	○공동·전문조직: 3년 ○일반조직: 1년
	②과실수급안정사업	○계약자금(70%, 품대+제비용), 손실대비용 운용자금(30%)	○상동

□ 자금유형

구 분		'07예산액(억원)	비고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소 계	4,951	용자
	①공동마케팅조직지원사업	1,000	
	②산지유통전문조직지원사업	3,106	
	③산지유통일반조직지원사업	845	
수급안정사업	소 계	300	용자
	①시설채소약정출하사업	-	
	②과실수급안정사업	300	
합 계		5,251	

□ 지원조건

- 산지유통활성화지원 : 용자 80%, 자부담 20% (공동마케팅조직, 전문조직)
- 시설채소 약정출하, 과실수급안정사업 : 용자 80%, 농협 20%

□ 사업주관기관 : 농협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 사업담당부서 :

- 산지유통활성화 : 농림부 유통정책과 (☎02-500-1829~30),  
농협중앙회 산지유통부(☎2080-6233)
- 시설채소 약정출하 : 농림부 채소특작과 (☎02-500-1866~7),  
농협중앙회 원예부(☎2080-6341)
- 과실수급안정사업: 농림부 과수화훼과 (☎02-500-1876~7),  
농협중앙회 원예부(☎2080-6364)

□ 신청기관 : 농협중앙회 및 농수산물유통공사



## 채소수급안정사업(시설)

### □ 사업목적

- 생산과일 기조를 보이고 있는 시설채소류의 출하량을 산지농협이 신축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
- 산지농협과 농가간에 출하량과 시기를 미리 약정하고 수급불안시 유통협약을 통하여 출하량 조절 등 신속한 수급균형 유지

### □ 지원대상

- 사업대상 품목 : 5개 품목(오이, 호박, 가지, 토마토, 풋고추)
- 사업대상자 : 해당 품목의 주산지 농협(지역농협, 품목농협)

### □ 사업내용

- 정부·농협공동으로 수급안정사업자금을 조성하여 이 자금을 산지농협등에 약정출하자금으로 지원
- 산지농협등은 지원받은 자금으로 농가와 출하약정 및 유통협약을 체결, 약정물량을 시장상황에 따라 출하시기와 출하량 조절을 통해 시설채소 수급안정 및 경영안정 도모

□ 자금규모 : 222,150백만원(정부융자금 177,720, 농협자금 44,430)

### □ 지원조건

- 금리 : 무이자
- 지원금액 및 기간 : 품목별,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농협중앙회장이 달리 정함

□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채소특작과

### □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채소특작과(☎02-500-1866~7)
- 농협중앙회 : 원예부 시설채소팀(☎02-2080-6341~4)

□ 신청기관 : 지역농협, 품목농협

# 인삼계열화사업

## □ 사업목적

- 인삼의 생산·가공·유통 등 일관체계 구축을 통해 고품질 청정인삼의 생산·유통으로 고려인삼 성가제고
- 인삼경작농가의 초기 경영비 부담완화로 고품질 청정인삼 생산 및 소득안정 도모

## □ 지원대상

- 예정지관리를 포함한 재배과정에 대한 이력관리 등을 실시하여 고품질 청정인삼을 생산하고, 이를 수매·가공·유통하여 생산·유통을 계열화 하려는 조직(농협, 일반업체 등 포함)

## □ 사업내용

- 계약재배
  - 인삼경작농가와 생산자단체간에 재배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재배자금의 지원함으로써 초기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도모
- 수매사업
  -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되는 물량을 사업대상조직이 전량 수매하여 가공·판매함으로써 생산자단체의 가공사업 활성화 등을 통한 유통구조개선 도모

## □ 자금유형

- 계약재배 : 사업량 500ha, 사업비 108,000백만원(융자 80%, 자담20%)
- 수매사업 : 사업량 1,100톤, 사업비 260,000백만원(융자 80%, 자담20%)

## □ 지원조건

- 국고융자 80%, 5년거치 일시상환, 무이자(단, 수매사업은 연리 3%)

□ 사업주관기관 : 농협중앙회

□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채소특작과(☎02-500-1868~9)

□ 신청기관 : 지역농협, 일반인삼제조업체

## 농산물 가공원료수매자금 지원사업

### □ 사업목적

- 농산물가공공장 경영자(이하 '가공업체'라 함)에게 국내산 농산물수매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에 기여
- 업체들의 경영활성화를 통한 원료농산물의 대량 구입체계 구축

### □ 지원대상 : 정부지원 농산물가공업체, 일반 농산물가공업체, 전통주류 제조업체

- 정부지원 농산물가공업체 :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기타 가공업체, 외식 프랜차이즈(한식)업체
- 일반 농산물가공업체(정부 미지원) : 농업경영체, 기타 가공업체
- 전통주류 제조업체 : 국산원료 및 부재료를 사용한 민속주, 지역 특산주 등 제조업체

### □ 사업내용

- 농산물 가공업체가 당해 업체의 가공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구입할 경우 용자 지원하는 자금으로 성출하기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도모

### □ 자금지원(취급기관) 및 조건 : 전액 용자지원

- 정부지원 농산물가공업체(농협) :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회원 조합(연리 3.0%), 기타 가공업체(연리 4.0%)
- 일반 농산물가공업체(농유공) : 농업경영체(3.0%), 기타 가공업체(연리 4.0%)
- 전통주류 제조업체(농유공) : 농업경영체(30.0%), 기타 가공업체(연리 4.0%)

### □ 수매의무액 및 대출기간 : 지원금액의 125%, 2년 이내

### □ 사업주관기관 : 농산물유통공사(자금지원팀), 농협중앙회(가공사업팀)

### □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식품산업과(02-500-1850/49)

### □ 신청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역농협

## 농산물 출하촉진자금지원

### □ 지원대상

- 농수산물도매시장(축산물 제외)의 도매시장법인(공공출자법인, 민영도매시장 포함), 시장도매인, 개설자별 중도매인 평가결과 우수이상 중도매인
  - 차등지원 : 농수산물도매시장 평가결과, 전자경매 실적 등에 따라 차등지원 가능
  - 제외대상 : 대금 즉시결제 불이행 법인·시장도매인, 위약자 처분 기준에 의거 지원중단기간에 해당되는 자 및 도매시장법인 등에 경락대금 체납이 있는 자
- 농협중앙회 공판장, 회원조합 공판장 및 농수산물유통공사 화훼공판장
  - 차등지원 : 농협, 유통공사의 자체 세부규정에 의거 차등지원 가능
  - 제외대상 : 대금 즉시결제 불이행 공판장, 거래질서 문란 등 자금지원효과가 없는 공판장
- 종합유통센터 운영주체
  - 농안법 제69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운영주체
  - 제외대상 :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의 운영지침 등에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종합유통센터 운영주체
- 산지유통인 :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한 자
  - 정부지원금액의 220%이상 도매시장 및 공판장에 출하의무

### □ 사업내용 : 소비지 유통활성화

- 재 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지원자금의 종류

### <도매시장·공판장>

- 선 도 금 : 도매시장·공판장으로의 출하증대를 유도하여 도매시장·공판장
- 결제자금 : 도매시장·공판장에 출하되는 농산물의 대금결제자금 및 경락대금 등의 결제자금

### <종합유통센터>

- 선 도 금 :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사업자가 생산자(단체)와의 출하 약정을 위한 출하선도금
- 결제자금 :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에 출하되는 농수산물의 대금결제자금

### <산지유통인>

- 선 도 금 : 생산자(단체)와의 출하약정을 위한 선도금

#### 자금유형

- 사업비 : 108,840백만원(용자 100%)

#### 지원조건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 출하선도금, 대금결제자금 : 1년이내, 4.0%,
- 농협공판장, 중도매인
  - 출하선도금, 대금결제자금 : 1년이내, 3.0~4.0%(중도매인)
- 농수산물유통공사공판장, 중도매인, 회회경영체 등
  - 대금결제자금, 운영활성화자금 : 1년이내, 4.0%
- 종합유통센터
  - 출하선도금, 대금결제자금 : 1년이내 4.0%
- 산지유통인
  - 출하선도금 : 1년이내 4.0%

####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 사업담당부서

- 도매시장·공판장, 산지유통인 소비자유통활성화자금
  - 농 립 부 : 농산물유통국 유통정책과 (☎02-500-1828)
  - 농수산물유통공사 : 도매시장팀 (☎02-6300-1294)
  - 농 협 : 공판지원부 (☎02-397-7134)
- 종합유통센터 출하촉진자금
  - 농 립 부 : 농산물유통국 소비안전과 (☎02-500-1834)

#### 신청기관

- 도매시장 :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공판장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공판지원부, 종합유통센터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업경제기획실, 산지유통인 : 농수산물유통공사

## 직거래사업

### □ 사업목적

- 생산자단체·소비자단체·대형유통업체 등에 직거래자금을 지원하여 산지와 직거래 활성화 유도
- 우수 농산물 전자상거래 기업의 운영자금으로 해소를 통한 농산물 전자상거래 조기 정착 도모

### □ 지원대상

- 생산자단체 : 농협중앙회(판매장 포함) 및 지역농·축·인삼협동조합
- 소비자단체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직거래를 추진하는 영농조합법인 농산물 전자상거래 사업을 수행하는 자
- 대형유통업체 : 백화점·대형점·직영점형 체인사업자

### □ 사업내용

- 생산자단체 : 직거래 추진실적·계획 등을 감안, 농협중앙회에서 세부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배정
- 소비자단체·전자상거래업체 :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세부지원기준을 마련 배정
- 대형유통업체 :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세부지원기준을 마련하여 배정

### □ 자금유형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사업비 합계	예산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용자		
	19,000	19,000	-	19,000	-	-

### □ 지원조건

- 생산자단체 : 지원금액의 250%이상 사업의무(읍이하지역은 125%이상)
- 소비자단체·전자상거래업체 : 지원금액의 125%이상 사업의무
- 대형유통업체 : 지원금액의 250%이상 사업의무
- 용자조건 및 금리 : 생산자·소비자단체·전자상거래(3.0%), 유통업체(4.0%), 1년 이내 상환

### □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 □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산물유통국 소비안전과(☎02-500-1841~2)
- 농협중앙회 : 원예부 소비촉진팀(☎02-2080-6354~5)
- 농수산물유통공사 : 도매시장팀(☎02-6300-1291~7)

### □ 신청기관 : 농협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축산물 자조금사업

### □ 사업목적

- 생산자단체가 자발적으로 농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도모
- 품목별로 전국적인 생산자조직에 의한 자율적 수급조절 및 소비촉진으로 시장가격 안정 및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

### □ 지원대상

- 국내산 농산물(아래의 각 항목도 동일하게 적용 함)로서 전국적으로 해당품목을 대표하는 생산자조직의 구성이 가능하고 소비촉진, 수급조절능력을 갖춘 품목단체

### □ 사업내용

-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및 판로확대를 위한 시장개척 사업
- 품질향상, 자율적 수급조절 등 당해 자조금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사업
- 유통협약이나 유통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경비의 지출 등

### □ 자금유형

-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보조금 지원

### □ 지원조건

- 품목특성을 고려하여 생산자단체가 자율적으로 조성한 자조금의 100% 범위내에서 보조금 지원

### □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 채소특작과, 과수화훼과, 친환경농업정책과

### □ 사업담당부서 및 신청기관

- 제도총괄 : 농림부 채소특작과(☎02-500-1864~65)
- 채소·특작류 : 농림부 채소특작과(☎02-500-1857~71)
- 과수·화훼류 : 농림부 과수화훼과(☎02-500-1876~77, 1882~83)
- 친환경농산물 : 농림부 친환경농업정책과(☎02-500-1808, 1814)

## 축산자조금조성사업

사업목적

- 생산자단체가 자율적으로 축산물의 판로 확대, 소비촉진,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
- 자조활동자금의 조성 및 운용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국산 축산물의 품질 및 안전성을 적극 홍보하고 국제경쟁력 제고

지원대상

- 민법 제32조에 의거 구성된 품목별 비영리법인인 전국단위의 단체, 농업협동조합법 제121조에 의거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자조금을 조성한 축산단체

사업내용

- 축산농가의 자율적인 자금 조성에 대한 보조금 지급
- 품목특성을 고려하여 축산분야별로 거출금의 100%범위 이내에서 지원
- 자조금 조성 축종의 확대 유도
- 생산자의 자율적 수급조절 능력이 미흡하므로 과잉생산으로 가격 하락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고, 특히 축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소비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지원

자금유형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사업비합계	예산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7개축종	27,000	13,500	13,500	-	-	13,500

지원조건 : 거출금의 100% 범위 이내

사업주관기관 : 축종별 생산자단체

사업담당부서

- 한우자조활동자금 : 축산경영과(☎02-500-1902)
- 낙농자조활동자금 : 축산경영과(☎02-500-1909)
- 양돈자조활동자금 : 축산경영과(☎02-500-1995)
- 양계자조활동자금 : 축산경영과(☎02-500-1907)
- 오리자조활동자금 : 축산경영과(☎02-500-1907)
- 양육자조활동자금 : 축산정책과(☎02-500-1900)

신청기관 : 농림부 축산정책과, 축산경영과



## 채소수급안정사업(노지)

### □ 사업목적

- 채소류 수급 및 가격안정, 재배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장, 생산자단체의 산지시장 주도화 시장교섭능력 배양

### □ 지원대상

-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연합판매조직, 대형유통업체, 가공업체 등 법인체
  - 재배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이 지원대상에 계약재배사업 참여

### □ 사업내용

- 정부·농협 공동으로 수급안정사업자금을 조성하여 이 자금을 산지농협 등에 계약재배사업 자금으로 지원
- 산지농협 등은 지원받은 자금으로 농가와 계약재배를 실시하고, 계약물량은 가격동향에 따라 출하조절을 실시하여 가격등락 완화

□ 자금규모 : 511,250백만원(정부융자금 409,000 : 농협자금 102,250)

### □ 지원조건

- 사업대상자에 대한 자금지원 조건
  - 금리 : 무이자(단, 일반법인 등에 대해서는 대출관리비용 등을 받을 수 있음)
  - 지원금액 및 기간 : 수행능력, 수급전망 등을 감안 농협중앙회장이 별도시달
- 사업자금과 운용자금 비율
  - 총 자금 중 사업자금 70~80%, 운용자금 20~30% 원칙

□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채소특작과

### □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채소특작과 : (02-500-1857/8)
- 농협중앙회 원예부 노지채소팀(02-2080-6331)

□ 신청기관 : 농협중앙회 원예부 노지채소팀

## 원예브랜드사업

### □ 사업목적

- DDA/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고 원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산지 시·군에 원예작물 브랜드화 사업을 포괄 지원
- 현행 경쟁력 열위 생산·유통구조를 비용절감, 고품질화, 마케팅 경쟁력을 높이는 구조로 전환시키기 위해 생산에서 유통까지 패키지 사업으로 추진

### □ 지원대상

- 시장·군수 또는 브랜드경영체
  - \* 브랜드경영체 : 품목조직·생산자단체·지자체·대량수요업체가 참여하는 사업법인

### □ 사업내용

- 원예작물 브랜드화 사업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포괄 지원
  - 브랜드 관리지원 : 조직결성, 교육 및 컨설팅, 마케팅 경쟁력제고 사업, 홍보비 등
  - 비용절감 및 고품질 생산기반조성 : 종합처리시설 지원
  - 원료확보 및 비가림 등 고품질 생산시설 용자지원

### □ 자금유형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사업비 합계	예산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용자		
2개소	10,965	8,166	1,866	6,300	1,938	861

### □ 지원조건

- 지원단가 : 지구당 200억원(자부담 포함)
  - 3년간 분할지원(1년차 30%, 2년차 30, 3년차 40)
- 지원조건
  - 브랜드 관리지원(국고보조 40%, 지방비보조 60%)
  - 비용절감 및 고품질 생산기반조성(국고보조 40%, 지방비보조 40%, 자부담 20%)
  - 원료확보 및 고품질 생산시설지원 (국고용자100% : 이자율 3%, 5년 분할상환)

###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 □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총괄) : 채소특작과(☎02-500-1861~2)
- 시·도 : 담당부서(농산유통과, 원예유통과, 유통특작과 등)
- 시·군·자치구 : 담당부서(농림과, 농정과 등)

### □ 신청기관 : 시·군

## 동절기 수급안정사업

### 사업목적

- 대설, 강풍 등 이상기후로 인해 비닐하우스 시설농가에 대규모 재해가 빈발하고 있어 시설농업인이 기존 시설을 보강할 수 있도록 보강 지주, 조리개 교체, 기초설치 등을 지원

### 지원대상

- 재해에 취약한 비닐하우스로서 100m<sup>2</sup>이상의 시설보강을 원하는 농업인

### 사업내용

- 보강지주, 조리개 교체, 기초설치, 온풍덕트등

### 자금규모 : 12,700백만원

### 지원조건

- 농안기금 융자 100%(금리 1.5%, 3년거치 7년 상환)

###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채소특작과

###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채소특작과 : (☎02-500-1857~8)
- 시·도 및 시·군 원예유통담당부서
- 융자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 신청기관 : 시·군·구

##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 □ 사업목적

- 김치·채소·인삼·과실·화훼·축산물, 가공밥 등에 대하여 WTO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별비, 포장비, 운송비 등 수출 물류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수출확대 도모
- 수출농축산물의 안전성 확보, 공동대표브랜드 육성, ISO·HACCP 인증 지원 등 국산 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

### □ 지원대상

- 농축산물 수출업체·단체·개인
  - \* 농축산물의 수출과정에서 관련규정을 위반하거나, 국가이미지나 국익을 손상시킨 업체 등은 지원 제외

### □ 사업내용

- 지원대상품목 : 국내산 김치, 채소, 인삼, 과실, 화훼, 축산물, 가공밥 등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품목
- 지원대상 비용
  - 수출물류비 : 수출시 소요되는 포장, 선별, 운송비 등
  - 수출품질경쟁력확보사업 : 수출농축산물의 안전성 확보, 공동대표브랜드 육성, ISO·HACCP 인증비 등

### □ 자금유형

- 사업량 124천톤, 사업비 28,882백만원(국고 정액보조)

### □ 지원조건

- 수출물류비 : 수출대상 국가별 표준물류비의 30% 수준
- 인센티브 : 신규시장 개척, 항공운송 등에 대해 일정비율 추가 지원

□ 사업주관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식품산업과(02-500-1863)

□ 신청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산물 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

□ 사업목적 : 해외시장에서 우리 농산물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출 농업기반 구축 및 수출진흥여건 조성

□ 지원대상 :

- 국제박람회참가사업 : 농산물 및 가공식품, 농기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출하는 업체(관련단체포함)로서 국제박람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
- 수출유망농산물 개발지원 : 농산물 및 가공식품을 수출하거나 계획이 있는 생산자,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수출업체 및 수출관련 단체
- 수출컨설팅 : 정부 및 지자체 지정 원예전문생산단지 또는 시·군 등 지자체의 추천에 의거 선정

□ 사업내용

- 국제박람회참가사업
  - 전시장 임차 및 한국관 설치/ 현지 매체홍보(광고, 홍보물 제작 등)
  - 현지시장 정보조사, 주요바이어 발굴 제공 및 사전수출마케팅 지원
  - 박람회 참가, 한국관 운영 및 현장 수출상담 지원
- 수출유망품목 개발지원
  - 수출확대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현지인의 기호, 식관습에 맞도록 개발 및 마켓테스트, 시험수출 등을 지원
- 수출컨설팅
  - 상품성 제고를 위한 재배, 생산기술 및 수확 후 품질관리분야 지도
  - 해외 재배기술 전문가를 초청하여 농가 개별지도 등을 통해 선진 기술 습득

□ 지원조건 : 정액보조

□ 사업주관기관 및 담당부서

- 농림부 : 식품산업과(☎02-500-1853~4)
- 농수산물유통공사 : 수출기획부(☎02-6300-1332~3)

□ 신청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 우수농산물지원사업

### □ 사업목적

- 농식품 수출업체나 단체가 우수농산물을 수매·가공하여 수출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수출확대를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 도모

### □ 지원대상

- 우수농산물 또는 그 가공제품 및 부자재를 생산·저장·가공하여 수출하거나 수출업체에 공급하는 업체
- 수출용 시설채소·화훼류 재배 경영체(농가·법인)

### □ 사업내용

- 농식품 수출업체의 국산 우수농산물의 원료구매자금, 유망품목 시장 개척자금, 운영활성화 자금 지원
- 우수농산물 부자재 비축공급업체의 운영활성화 자금 지원
- 수출용 시설채소 재배 경영체의 동계 난방유류 구입비 및 화훼류 수출농가 출하선도자금 지원

### □ 자금유형

- 농안기금 용자 : 사업비 327,000백만원(용자 90%, 자담10%)
  - 시설채소 유류대 및 화훼류 출하선도자금은 용자 80%, 자담 20%

### □ 지원조건

- 대출기간 : 1년, 대출금리 : 농업인 3.0%, 수출업체 4.0%
  - 인센티브 부여 : 지원대상자를 종합 평가하여 최우수는 3.0%(농업인 2.0%), 우수는 3.5%(농업인 2.5%)의 금리를 적용

□ 사업주관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식품산업과(02-500-1863)

□ 신청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 시설현대화사업

### □ 사업목적

- 식품산업체에 현대화 시설을 지원하여 안전한 식품공급 및 식품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품질좋은 먹거리(식품)를 공급할 수 있는 농식품 공급 체계를 구축
- 수출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현대화 자금을 지원하여 수출기반 확충 및 상품 제고를 통한 우수농산물의 수출 경쟁력 강화

### □ 지원대상

- 우수식품 품질인증(HACCP, ISO22000 등)을 받고자 하는 전통식품 생산업체, 산지가공업체, 기타 농식품업체 등(신규 창업업체 지원 불가)
- 농산물 및 그 가공제품의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자)
  - 수출실적이 최근 2년간 200천\$ 이상이거나, 당해연도 수출계획(L/C)에 한해 인정)이 100천\$ 이상인 업체
  - Local L/C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해 수출자에게 최근 2년간 200천\$ 이상 수출품을 공급한 실적이 있는 업체(자)

### □ 사업내용

- 식품산업체(식품제조업, 전처리사업 등)에 대한 품질인증 시설투자 지원
- 우수농산물 수출에 필요한 시설 관련 지원

### □ 지원조건

- 식품산업체 품질인증 시설자금 : 연리 2%
- 우수농산물 수출업체 시설자금 : 연리 4%
- \* 단,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 연리 3%

### □ 사업주관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 □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산물유통국 식품산업과(02-500-1848, 1863)
- 농수산물유통공사 : 식품산업팀(02-6300-1309)

### □ 신청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운영

### □ 사업목적

- 국제적(FAO, Codex)으로 추진되고 있는 안전농산물 생산 제도인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 Good Agricultural Practices)를 도입하여 선진수준의 안전 농산물 생산
  - 농업인 경쟁력 제고, 소비자 신뢰제고, 수출기반 확충
- GAP 농산물의 수확후 처리·가공을 위해 거점시설인 산지유통센터(APC) 등에 GAP 기준에 부합되는 위생시설·장비 등을 갖추게 함으로써 안전농산물 공급망 구축.
- DDA 이후 국내 농산물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로 정착 추진

### □ 지원대상

- 지원범위 :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생산자단체의 공동출자법인이 운영하는 농산물산지유통시설에 한함.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의한 청과류를 취급(특용·약용작물 포함)하는 경우에 한함.
  - 생산자단체와 일반유통업체가 공동투자(단, 생산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연합이 지분의 50%이상 점유)하는 산지유통시설은 이 지침에서 생산자단체가 사업자가 되는 산지유통시설로 봄.
- 최근의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상위 75% 이상 사업자에 한함.



□ 사업내용

- 국산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통하여 생산농가의 소득 향상과 소비자의 국산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 제고.
- 선정된 산지유통시설에 대해 GAP 시설기준에 부합되는 위생시설·장비 지원
  - 생산자단체 보유시설 중 일정규모 이상이며, 실질적으로 산지유통센터의 기능을 하는 시설.

\* 규모 : 유통시설(집하선별포장장, 저온저장 및 예냉시설) 규모가 200평 이상인 경우.

□ 자금유형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사업비합 계	예산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4 개소	2,666	800	800	-	533	1,333

□ 지원조건

- 지원비율 : 국고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 사업규모 : 6.7억원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자의 능력과 사업성 등에 따라 사업비 증감 가능

□ 사업주관기관

- 지자체 (시장·군수<자치구 포함>)
- 다만, 지원대상자 심사 및 우선순위 확정은 시·도지사

□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소비안전과 (☎02-500-1838, 2027)
- 시·도 : 당해 시·도 직제에 따름(농정, 농업, 유통 등)
- 시·군·자치구 : 당해 시·군 직제에 따름(산업, 농정, 유통 등)

□ 신청기관 : 시·군·구

## 농산물 유통전문교육

### □ 교육목적

- 산지·소비지의 농산물 유통현장에서 실제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농산물 유통개혁 선도기반 구축

\*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 제75조

### □ 세부내용

- 교육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교육원, 대학교 등 10개 기관
  - 농협대, 한식연, 명지대, 충남대, 단국대, 전북대, 순천대, 경북대, 경상대
- 전문과정 개설분야 : 산지마켓팅, 소비자마켓팅, 품목별 마켓팅 및 유통업 경영혁신분야
- 중점 교육대상 : 산지유통전문조직·산지유통센터 임직원, 농협조합장, 도매시장·종합유통센터 임직원, 유통업체 임직원, 영농조합법인 임직원, 경매사, 선도농업인, 등
- 교과과정편성 : 유통이론 + 현장실습 + 선진사례연수
- 교육기간 : 6개월(필요시 3개월내 가감)로서 최소 150시간 이상 필수
- 교육생 모집 및 선발 : 각 대학별로 모집
  - 일간지,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공개적인 방법으로 교육생 모집공고 실시
  - 별도의 교육생 선발기준을 마련하되, 가급적 중점교육대상을 우선 선정
- 교육비 지원 : 국고지원 70%(농안기금 지원), 자담 30%
  - 교육비 지원한도는 과정당 17,500만원, 교육생1인당 500만원
- 기관별 업무분담
  - 농림부(유통정책과02-500-1817-8) : 기본계획 수립 등
  - 유통교육원(031-400-3530)공사 : 교육사업비 집행 및 정산 업무
  - 지역교육기관 : 교육대상자 모집·선발, 교육생관리, 교육수행 업무

### □ 신청기관 : 유통교육원

## 과실 생산 · 유통지원사업

### □ 사업목적

- 개방화에 대응하여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품질 과실 생산에서 유통까지 필요한 사업을 지원

### □ 지원대상

- 품목 전문조합, 지역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법인. 단 생산시설현대화사업은 지역과수발전계획에 참여하는 농가

\* 생산자단체 연합사업단은 '08년 사업신청 대상에서 제외

### □ 사업내용

-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 과수 생산기반 정비사업
-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

### □ 자금유형 및 지원조건

단위사업명	사업개요	지원기준
① 고품질생산 시설현대화	○ 고품질생산으로 외국산과 품질경쟁이 가능하도록 시설현대화 등 지원	○ 기금보조 25%, 기금융자 30, 지방비 25, 자부담 20
② 과실생산단지 기반조성	○ 과수전문생산단지에 용·배수로, 경작로 등 생산·출하기반정비로 경쟁력 제고	○ 기금보조80%, 지방비 20
③ 거점산지유통 센터건설	○ 과수 주산지 권역별 거점산지유통 센터를 설치,규격·공동출하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 및 부가가치 제고	○ 지자체 : 기금보조50%, 지방비 50 ○ 생산자단체 : 기금보조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시장, 군수)

### □ 사업담당부서

- 사업총괄기관 : 농림부 과수화훼과 (☎02-500-1880, 1884)
- FTA기금관리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FTA기금팀(☎02-6300-1172~5)
- 대출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자금지원팀(☎02-2080-6782)

□ 신청기관 : 시·군·구

## 과수 우량묘목생산지원사업

### □ 사업목적

- 과일 생산의 근간인 묘목을 병해충(바이러스, 바이로이드 등)을 제거한 생산성이 높은 묘목으로 농업인에게 공급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고품질 과일생산 촉진

### □ 지원대상

- 종자산업법에 의거 과수묘목생산·판매가 가능한 법인(농협,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기술센터 등으로 한국과수농협연합회의 자체보증에 참여하는 자

### □ 사업내용

- 묘목생산지원 지원 : 토지임차, 기반정비, 모수포 조성, 차근묘 발근, 품종접목, 병해충 방제, 시비, 결가지발생 및 유인 등 묘목생산 비용
  - ※ 묘포장을 기 조성한 지원대상자에게는 기존 묘포장 보완 및 묘목생산을 지원
  - 1차년도 : 기반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 2·3차년도 : 묘목생산관리에 필요한 비용

### □ 자금유형 및 지원조건

- 국고보조 60%, 국고융자 20, 자부담 20
  - 국고융자 상환조건 : 연 3%, 5년거치 5년 균분상환
  - 지원기간 : 3개년(1차년도 : 기반조성+관리비, 2·3차년도 : 관리비)
  - 지원단가(10ha 기준) : 1년차 564백만원, 2~3년차 160백만원
- 융자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 □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과수화훼과 (☎02-500-1880, 1884)

### □ 사업담당부서 : 한국과수농협연합회(☎02-6300-2292)

- FTA기금관리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FTA기금팀(☎02-6300-1172~5)
- 대출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자금지원팀(☎02-2080-6782)

### □ 신청기관 : 한국과수농협연합회(☎02-6300-2292)

## 과원영농규모화사업

### □ 사업목적

- 과원매매·장기임대차를 통해 과수재배농가의 과원규모를 확대하고 과원을 집단화함으로써 경쟁력 및 개방 적응력 제고
- 젊고 유능한 인력을 농촌에 유치하여 규모화·전문화된 과수경영체로 육성

### □ 사업내용

- 과원매매사업
  - 비농가, 전업(轉業)·은퇴 또는 과원규모를 축소하는 농가와 비농업법인 소유의 과원을 매입하여 이를 과수농가에게 매도
- 과원장기임대차사업
  - 비농가, 전업(轉業)·은퇴 또는 과원규모를 축소하는 농가 등으로 부터 과원을 장기 임차하여 과원의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희망하는 과수농가에게 장기임대

### □ 지원대상

- 대상과원 : 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안의 과원
- 지원대상자
  - 과원 경영능력과 기술력을 갖추어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과수농가
  - 과수를 주 작목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 '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예산안)	2008년이후	
사업량(ha)	273	270	430	420	1,293	
사업비	계	23,500	23,500	35,964	34,934	108,205
	보조	-	-	-	-	-
	융자	21,400	21,400	33,300	32,364	100,189
	지방비 자부담	- 2,100	- 2,100	- 2,664	- 2,570	- 8,016

□ 지원규모 및 조건

사업종류	지원규모	지 원 조 건	
		융자금리	상환기간 및 방법
○ 매매	기존소유규모 포함 5ha	연리 2.0%	연령에 따라 15~30년 원금 균분상환·거치식상환·체증식상환
○ 임대차	기존임차규모 포함 5ha	무이자	5~10년 원금 균분상환

※ 과원매매의 상환기간은 과수농가의 연령을 고려하여 약정하고, 농가단위 또는 필지단위 거래시는 기존소유(임차)규모를 포함하여 다소 초과할 수 있음

○ 매매사업의 사업비 부담조건

- 지원상한 : **제곱미터(m<sup>2</sup>)당 12,100원** (과수목 포함)
- 자 부 담 : 지원상한 범위내에서 10%(지원상한 초과금액은 전액 자부담)

□ 사업 주관기관 : 농림부 과수화훼과(☎02-500-1882)

□ 사업담당부서 : 한국농촌공사

- 본 사 : 농지은행사업처(☎031-420-3380,3366)
- 각 도본부 : 농지은행팀
- 시·군 관할지사 : 농지은행팀

□ 신청기관 : 한국농촌공사

## 과수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 □ 사업목적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칠레산 과실의 수입증가로 국산과실 가격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일정부분을 보전함으로써 과수재배농업인 등의 경영안정을 도모

### □ 지원대상

- 지원대상품목 : 시설포도(가온이 가능한 완전밀폐형 시설하우스에서 생산되는 포도), 키위
- 지원대상자 : 지원대상품목의 고시일('04. 5.24) 이전부터 당해 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 등(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포함)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품목고시일 이후 신규로 조성한 과원
  - 노지 포도 생산자

### □ 지급단가 : 기준가격과 당해연도 평균가격의 차액에 보전비율 80%를 곱하여 산출한 가격

- 지급단가 : (기준가격 - 당해연도 평균가격) × 80%
- 기준가격 : 시설포도 4,560원/kg, 키위 1,700원/kg

### □ 사업시행기간 : 2004년 ~ 2010년(7년간)

### □ 지원조건 및 형태 : FTA기금, 보조 100%

### □ 2007년도 예산안 : 1,000백만원

※ '04~'06년은 소득보전직불 발동요건 미충족으로 집행실적 없음.

###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 □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과수화훼과(☎02-500-1873~1883)
- 시·도 : 원예담당부서
- 시·군·자치구(사업신청) : 원예담당부서

### □ 신청기관 : 시·군·구

## 과원폐업지원사업

사업목적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과수재배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 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 농업인 등이 폐업하는 경우 폐업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폐업농가의 경영안정 및 과수산업의 구조조정 도모

지원대상

- 대상품목 : 시설포도(가온이 가능한 완전밀폐형 시설하우스에서 생산되는 포도), 키위, 복숭아
- 지원대상자
  - 폐원품목 D/B화 관리농가로서 지원대상품목 고시일('04.5.24) 이전부터 당해 품목을 생산하던 과원(과수목)을 계속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 등(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포함)

지원단가 및 조건

- 지원단가
  - 폐원 : 시설포도 10,444천원/10a, 키위 4,159, 복숭아 3,316
  - 양도 : 시설포도 3,481천원/10a, 키위 1,386, 복숭아 1,105
- 재원 및 조건 : FTA기금, 보조 100%
- 지원대상(폐원 또는 양도)면적 산출 방법 : 과수목이 심어진 면적

2007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ha,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1,511	60,300	60,300	60,300	-	-	-
폐 원	1,511	60,300	60,300	60,300	-	-	-
양 도	-	-	-	-	-	-	-

※ 양도사업 신청이 있을 경우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과수화훼과(☎02-500-1873~1883)
- 시·도 : 원예담당부서
- 시·군·자치구(사업신청) : 원예담당부서

신청기관 : 시·군·구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 □ 사업목적

- 초식가축 사육농가에 대한 양질 조사료의 생산·이용 확대를 통한 축산물의 생산비 절감 및 품질 고급화로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 □ 지원대상

- 조사료를 재배하는 축산농가 및 생산자단체

### □ 사업내용

- 기반시설 : 초지조성에 필요한 진입로개설, 용수개발, 전기시설, 부지정지 등
- 조사료생산 : 양질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를 위한 초지조성·기성초지보완, 사료작물재배용 종자대, 벧짚 암모니아처리 및 곤포사일리지 제조지원사업 등
- 기계·장비 기타(융자) : 곤포사일리지제조 농기계·장비, 트랙터·과중기 등 조사료생산이용 장비, 사일로시설 등
-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생산사업 : 곤포사일리지 제조·운반비, 기계·장비(보조)
-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사업 :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에 필요한 기계·장비 지원
- 국내산 조사료 유통활성화 사업 :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지역 이외의 시·군 또는 시·도로 반출(관외판매)시 운송비 지원

□ 자금유형

(단위 : 백만원)

축 발 기 금			지 방 비	자 부 담	계
보 조	용 자	계			
25,504	6,900	32,404	14,550	24,431	71,385

□ 지원조건

- 보조 및 용자 지원비율은 『세부사업별 지원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
- 용자기간 : 10년 (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 금 리 : 연 3%

□ 사업주관기관

- 기반시설, 조사료생산 및 기계·장비 기타사업,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사업,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사업 : 시·군(자치구 포함)
- 국내산 조사료 유통활성화 사업 : 농협중앙회

□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축산경영과(☎02-500-1910)
- 시·도, 시·군·자치구 : 축산담당과
- 농협중앙회 : 축산지원부(☎02-2080-6568)

□ 신청기관 : 시·군·구

#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 □ 사업목적

- BSE(소해면상뇌증)예방 등을 위하여 사료 제조라인을 구분하거나 또는 시설을 개보수 하고자 하는 사료제조업체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안전사료 생산기반 구축
- 국제 사료곡물가격, 환율 및 해상운임 상승 등 여건변화에 대비하여 사료제조업체의 능동적인 대처를 위한 원료구매자금 지원으로 원료 수급 및 가격 안정 도모

## □ 지원대상

### <사료제조시설지원>

- 사료제조라인 구분 등 시설 개보수를 희망하는 사료제조업등록업체  
※ 사료제조업 미등록자 및 남은음식물사료 제조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료원료구매지원>

-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제조업등록업체

## □ 사업내용

### <사료제조시설지원>

- 개소당 사업비 : 사업계획에 의거 검토 지원
- 지원시설의 종류 : 부지 구입비를 제외한 건물, 기계·장비 및 시설비 등 지원

### <사료원료구매 지원>

- 지원대상자 :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제조업등록업체
- 개소당 사업비 : 지원요청 업체별 원료사용실적 등을 감안하여 배정

## □ 자금유형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축발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44	53,001	52,571	-	52,571	-	430

□ 지원조건

<사료제조시설지원>

- 지원조건 : 용자 70%, 자담 30%, 3년거치 7년상환, 연 4%(생산자단체 3%)

<사료원료구매 지원>

- 지원조건 : 1년거치, 일시상환, 연 4%(생산자단체 3%)

□ 사업주관기관

(가) 사료제조시설지원 : 시·도

(나) 사료원료구매지원 : 시·도 및 농협중앙회(사료사업지원단),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이하 “관련단체”라 함)

□ 사업담당부서

(가) 사료제조시설지원

- 사업총괄 : 농림부(축산물위생과)
- 사업주관 : 시·도(축산담당과)
- 업무지원 : 시·군·자치구(축산담당과)

(나) 사료원료구매지원

- 사업총괄 : 농림부(축산물위생과)
- 사업주관 : 시·도(축산담당과), 관련단체

□ 신청기관

- 시·도(시·군·구) 및 사료 관련단체

##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 □ 사업목적

- 가축분뇨 처리 시설·장비를 지원하여 자원화 등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유도
- 가축분뇨 퇴·액비의 생산·이용 활성화를 통해 자연순환농업 기반 조성

### □ 지원대상

#### < 단독시설 >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 오분법)에 의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할 축산농가 등

#### < 공동시설 >

- 축산단지, 축산계열사업주체(소·돼지·닭),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조합 등

#### < 정착촌구조개선 : 단독·공동시설에 준하여 지원 >

- 한센 정착촌의 법인체(영농조합법인 등), 축산농가, 한빛복지협회, 지자체

#### < 액비저장조 >

- 경종농가, 축산농가, 액비전문 유통주체

#### < 액비살포비 지원 >

- 시장·군수가 구성·운영하는 유통협의체에 참여하여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농경지 등에 액비를 살포한 전문 유통주체

### □ 사업내용

#### < 단독시설 >

- 퇴비·액비화시설, 정화방류시설, 기계·장비

#### < 공동시설 >

- 가축분뇨 퇴·액비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 기계·장비, 공동자원화 시설 등

#### < 정착촌구조개선 >

- 한센 정착촌에 가축분뇨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위의 단독시설 또는 공동시설

< 액비저장조 >

- 액비저장조(규격은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정) 및 폭기시설(펌프식 교반시설 등)

< 액비유통센터 >

- 바큇카, 액비살포 차량(트랙터 포함), 액비살포기, 암롤박스 등 액비의 수거·운반·살포에 필요한 장비

< 액비살포비지원 >

-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액비를 살포한 면적에 따라 ha당 150천원 지원

□ 자금유형

사업비 합계 (백만원)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56,304	36,394	18,977	17,417	17,300	2,610

\* 균특회계(제주도 계정)를 포함한 예산임

□ 지원조건(지원비율)

- 단독시설·공동시설 : 보조 30%, 지방비20%, 융자50%
  - 융자금 :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연 3%
- 정착촌구조개선 : 보조 70%, 지방비 30%
- 액비저장조설치지원 : 보조 30%, 지방비 50%, 자부담 20%
- 액비유통센터 : 보조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액비살포비지원 : 보조 50%, 지방비 50%
- 사업비(보조·융자 등), 지원규모, 금리, 거치 및 상환기간 등 지원조건

□ 사업주관기관

- 단독시설·액비저장조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 공동시설·정착촌구조개선·액비유통센터 : 시·도지사(“시장·군수”에게 위임가능)

□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축산경영과 자연순환농업팀(02-500-2122, 2196)
- 시·도 : 축산담당과
- 시·군·자치구 : 축산담당부서

□ 신청기관 : 시·군·구

## 마필산업육성사업

### □ 사업목적

- 국산 경주마 사육기반 확충 및 질적개량을 통한 경쟁력 강화
- 우수 경주마 생산으로 농가 소득증대
- 승마활성화를 위한 승마기반여건 조성

### □ 지원대상

- 경주마(제주마 포함)를 1년이상 사육하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농가
- 농·축협, 영농조합법인, 마필생산자협회(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한국 내륙말생산자협회, 제주마생산자협회 등), 지자체, 마사회
  - 영농조합법인은 경주마(제주마 포함) 사육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과잉마를 입식하고자 하는자(비농업인도 가능)
  - ※ 승마장시설은 경주마(제주마포함) 사육실적 없이 비농업인도 가능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년
- 지원내용
  - 경주마생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
  - 승마 기반조성에 필요한 승마장시설 지원
- 지원규모
  - 영농조합법인, 경주마생산자협회 등 단체 : 자기자본의 200%이내
  - 농·축협 등 공공기관 : 자기자본의 400%이내에서 지원
  - 승마장 : 개소당 1,000백만원
  - 공동육성조련시설 : 개소당 3,000백만원이내

자금유형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사업비합계	예산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용자		
	12,870	7,181	2,998	4,183	2,998	2,691

지원조건

-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 보조 20%, 지방비 20%, 용자 30%, 자담 30% (단,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 50%, 지방비 50%)
- 경주마 사육·기반시설 및 생산장비 : 용자 70%, 자담 30%
- 용자조건 : 연리 4%, 3년거치후 7년 균분상환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축산정책과
- 시·도 : 축산과 또는 농정과, 시·군 자치구 : 축산과 또는 산업과 (축산계)

신청기관 : 시·군·구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 □ 사업목적

-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여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과 경영안정을 유도

### □ 지원대상

-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 희망자(법인포함)
  - 축산법 제20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의 등록대상” 농가임에도 미등록한 농가(‘05년까지의 기존계약이 이월된 경우는 기존 계약분까지만 유효),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축산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업은 제외
- 계약대상우 : 한우 암소
- 참여기간 : 2007. 1. 1 - 2007. 12. 31
  - 계약신청기간 : 2006. 12. 1 - 2007. 5. 31
  - 계약장소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축협
- 계약체결시 계약대상자는 계약자 부담금 납입

### □ 사업내용

- 농림부장관은 매년 안정기준가격 등 사업기본방침 확정 발표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기본방침에 따라 세부사업시행요령을 작성하고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 시행
- 사업 주관 시장·군수는 지역축협과 함께 사업공고 및 농가홍보 실시
- 농협중앙회와 지역축협은 안정사업자금계정을 설치하고 시·군별, 자원별 구분 계리
  - 농협중앙회는 부담금 관리시 최소한 축산발전기금의 예치금 이자 수익률 수준을 유지해야 함
  - 지역축협은 계약자부담금과 지자체부담금을 수납 완료 후 15일 이내에 농협중앙회에 납입
- 농가는 지역축협에 사업참여를 신청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자 부담금 납입
  - 전년도 사업참여시 보전금을 지급 받지 못한 당해 계약암소의 계약 송아지에 대하여는 계약자부담금 면제

- 지방자치단체도 계약자부담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역축협에 설치된 안정사업자금계정에 납입
- 계약암소로부터 참여기간 내에 송아지가 생산된 때, 농가는 지역축협에 송아지 생산 신고
- 농협중앙회장은 매 분기별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을 통보
-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지역축협은 시·군별 보전금 지급소요액을 계산하여 시·군에 통보
- 시·군은 보전금소요액을 점검 확인하고 정부부담금을 계산하여 지역축협에 통보(보조금 교부결정)
- 지역축협은 농협중앙회장을 통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자금배정 요청
- 농림부장관은 시·군별 소요자금을 농협중앙회장에게 배정하고 시장·군수에 통보
-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자금을 배정받은 지역축협은 계약농가에게 보전금을 지급하고 시장·군수에게 지급결과 보고

자금유형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사업비 합 계	예산액(축산발전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용자		
보전금	650천두	9,757	5,297	5,297	-	2,230	2,230

지원조건

- 보조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 사업추진을 위한 교육·홍보
- 사업시행기관(지역축협) 지도·감독
- 보전금 지급소요액 확정 및 보전금 지급 교부결정
-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납부
- 기준가격의 공고 및 사업추진요령에 의한 보고 등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축산경영과(☎02-500-1902)
- 시·도 : 축산담당과
- 시·군 : 축산담당과

신청기관 : 지역축협

# 가축개량사업

## □ 사업목적

- 가축의 혈통등록, 능력검정, 유전평가, 종축선발 및 계획교배의 연쇄적 반복 과정을 거쳐 유전적으로 우수한 경제형질을 지닌 개체를 찾아 그 개체의 능력을 널리 이용
- 가축의 생산성을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국제 경쟁력 강화

## □ 지원대상

- 한우 개량·육종농가 육성
  - 개량·육종농가가 사육하는 등록암소(75천두) 및 검정암소(1.4천두)에 대한 혈통·번식·이동관리 및 발육조사 등 농가사례비와 조합관리비 지원
  - 개량농가 조사사례비 : 한우개량농가에 사례로 사료구입비를 지원
  - 개량농가 등록우관리비 : 등록우 관리조합 등 관리실적에 따라 지원
  - 육종농가 암소 검정사례비 : 한우육종농가에 암소검정사례비 지원
- 유우군 능력검정
  - 낙농가의 사육 젖소에 대한 생산, 혈통관리, 번식, 경영정보 수집 및 개체 우유성분분석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검정비 등 지원
- 가축개량사업소(한우·젖소개량)
  - 우량 보증씨수소 선발 및 정액 생산·공급을 위하여 가축개량사업소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가축혈통 및 가축개량기술 보급 확대를 위한 능력평가대회, 축산박람회 및 경쟁력 제고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관련단체에 지원
- 종돈경제능력검정에 필요한 시설 신축, 검정비 등을 농가와 관련 단체에 지원
- 닭의 산란계 및 육용계 검정을 위한 사료비 등 관련단체에 지원

□ 사업내용

- 한우개량·육종농가육성 : 개량·육종농가가 사육하는 75천두의 등록 암소 및 1.4천두의 검정암소에 대한 혈통번식 및 비육자료의 조사관리 등
- 유우균능력검정 : 농가사육 젖소 암소 160천두에 대한 생산, 사양, 번식, 경영정보 수집 및 개체유성분 분석 등
- 가축개량사업소(한우·젖소개량) : 우량 씨수소 선발 및 정액 생산·공급을 위한 가축개량사업소 운영 지원
- 종축등록 등 : 도 및 관련단체(협회)에서 종축등록에 필요한 관련 장비, 한우·젖소 능력평가대회, 축산박람회 및 경쟁력 제고사업
- 돼지경제능력검정 : 돼지의 능력검정 활성화를 위해 종돈검정농가에 검정 및 종돈검정소 시설 신축
- 닭경제능력검정 : 닭 경제능력 검정 추진

□ 자금유형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사업비합계	예 산 액			지방비	자 담
		계	보조	용자		
6종	36,681	25,385	25,085	300	319	10,977

□ 지원조건

- 한우 개량농가 및 육종농가 육성
  - 한우 개량농가의 관리대상 등록우 관리비 및 농가조사 사례비 보조
  - 한우 육종농가에 대한 암소검정사례비, 우형기설치비, 질병검진비와 검정결과 보증씨수소로 선발된 경우 개량장려금 보조
- 가축개량사업소, 종축등록 등 및 돼지·닭경제능력검정
  - 보조사업자(농가 및 축산관련단체·협회)에게 사업비 일보 보조 지원  
다만, 종돈검정소 신축사업인 경우 일부 용자금이 포함됨

## □ 사업주관기관

- 축산연구소 : 개량총괄기관
- 시·도 및 시·군 : 한우 개량농가 및 관리조합 지도·감독
- 농협중앙회 축산경제(축산지원부) : 한우 개량농가 및 관리조합 지원·관리, 유우군 능력검정
- 가축개량사업소 : 한우 육종농가 지원·관리, 한우능력검정, 한우 및 젖소 정액생산 공급
- 관리(검정)조합 : 한우개량농가, 유우군 검정농가 및 등록우 또는 검정우 관리·지원

## □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축산정책과(☎ 02-500-1894)
- 축산연구소 개량평가과(☎ 041-580-3359)
- 시·도(시·군·구)축산담당부서
-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축산지원부(☎ 02-2080-6551~6571)
- 가축개량사업소 검정팀(☎ 041-661-4694)
- 지역축협, 낙협, 한우조합
- 해당 축산관련 단체(협회)

## □ 신청기관

- 한우개량농가 : 관리조합(지역축협), 사업참여 한우협회 지부
- 한우육종농가 : 가축개량사업소 검정팀
- 유우군검정농가 : 검정조합(낙협), 한국종축개량협회
- 돼지경제능력검정 : 한국종축개량협회, 대한양돈협회

## 자연순환농업활성화지원사업

### □ 사업목적 및 추진방향

-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토양에 환원하고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알선하여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통한 농가소득 제고
- 경종과 축산이 함께하여 생태를 보전하는 자연순환농업 구현

### □ 지원대상

- 자연순환농업협약식을 체결한 농·축협, 영농조합법인 등
- 가축분뇨 퇴·액비 생산 및 이용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경종과 연계된 사업계획을 수립한 농·축협 및 영농조합법인 등

### □ 지원방법

- 지원형태 : 국고 용자
- 자금용도
  - 퇴·액비를 이용한 농산물의 출하선급금, 톱밥 등 원재료 구입비
  - 퇴비 판매에 따른 외상 미수금, 퇴·액비 이용확대를 위하여 임차한 농지 임대료
  - 퇴·액비 생산·유통 관련 교육·홍보, 자원화시설 등의 개·보수 자금

### □ 자금유형

- 사업량 : 10개소
- '07년 사업비(백만원) : 20,000(국고 용자 16,000, 자부담 4,000)

### □ 지원조건

- 개소당 사업비 : 20억원내외 (국고 용자 80%, 자부담 20%)
- 지원규모 : 20억원내외(국고 80%, 자부담 20%)
- 금리 및 지원조건 : 금리 2%, 3년거치 일시상환

□ 사업 주관기관 : 시·군·구 및 농협중앙회(☎02-2124-7432)

□ 사업 담당부서 : 농림부 축산경영과 자연순환농업팀(☎02-500-2123)

□ 신청기관 : 시·군·구

## 양봉산업육성사업

사업목적

- 체계적인 밀원수 식재 및 우수품종의 꿀벌 보급을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양봉산업으로 육성

지원대상

- 밀원수 묘목 보급 사업: (사) 한국양봉협회
- 우수 꿀벌 품종 보급 사업 : (사) 한국양봉협회

사업내용

(가) 밀원수 묘목 보급 사업

- 지역별로 집단밀원을 조성하여 고정양봉이 가능하도록 (사)한국양봉협회에 밀원수 묘목을 보급
- 양봉협회는 보급된 묘목을 각 시·도 지회를 통해 시·군 분회에 배분하여 산지, 공한지 및 가로 등에 식재

(나) 우수 꿀벌 품종 보급 사업

- 국내 우수 꿀벌 품종 선발
- 선발 품종의 지역적응시험 (벌꿀·로얄제리 생산성, 질병감염률, 번식력 및 월동력 등) 실시
- 지역적응시험을 통해 선발된 우수 계통에 대해서는 여왕벌 생산 농가를 구성하고, 기술지원을 통하여 농가보급체계 확립

자금유형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합계	예산액(축발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	516	308	308	-	-	208

지원조건

- 밀원수 묘목보급 : 묘목대 지원(기금보조 50%, 자부담 50%)
- 우수꿀벌 품종보급 : 여왕벌 구입비 등 지원(기금보조 100%)

사업주관기관

- (사) 한국양봉협회(☎02-3486-0882~6)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축산경영과(☎02-500-1902·5)

신청기관

- (사) 한국양봉협회 → 농림부 사업담당부서

## 도축·가공업체 시설 및 운영지원사업

사업목적

- 도축장 위생수준 제고 및 경영개선 도모를 통한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 부분육·냉장육·브랜드육 확대 및 위생적인 도축·가공시설 기반 확충

지원대상

- 도축장, 가공장(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식육가공업), 양계(농가, 축협, 영농조합법인 등), 유업체 또는 유가공조합

사업내용

- 시설자금 : 도축·가공시설, 계란집하장 및 등급시설, 유제품개발·생산시설 등
- 운영자금 : 원료구매자금, HACCP 운용비용 등

자금유형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계	예산액(축발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170개소	160,928	153,020	-	153,020	-	7,908

지원조건

- 시설자금 : 융자 70%, 자담 30%, 연리 3~4%(생산자 3%, 일반업체 4%), 3(5)년거치 7(10)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융자 100%, 연리 [도축장운영자금 0~3%, 유가공업체 3%, 기타사업 3~4%(생산자 3%, 일반업체 4%)], 1(2)년거치 일시(3년균분)상환

사업주관기관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 단,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은 한국육류수출입협회와 한국육가공협회, 유업체 경영안정자금은 농협중앙회 축산지원부임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축산국 축산물위생과(☎02-500-1921~2) : 도축·가공분야
- 농림부 축산국 축산경영과(☎02-500-1908~12) : 양계, 낙농분야

신청기관

- 시·도(시·군·구) 축산부서, 농협중앙회 축산지원부, 한국육류수출입협회, 한국육가공협회



##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

### □ 사업목적

- 소의 생산·도축·가공·유통 과정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문제 발생시 이동경로를 따라 추적 또는 소급을 통한 신속한 원인규명 및 조치로 소비자 피해와 경제적 손실 최소화
- 소비자들의 알 권리 충족 및 둔갑판매 방지 등으로 국내산 쇠고기 소비확대에 기여

### □ 지원대상

-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참여 시·군

### □ 사업내용

- 가축식별 시스템 구축(출생에서 도축까지), 유통단계 개체식별번호 전달(도축에서 최종 판매단계까지) →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 □ 자금유형

-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 사업량 : 도 단위 1~2개소, 25개 시·군, 22개 브랜드경영체
  - 사업비 : 3,919백만원(전액 보조)

### □ 지원조건

- 보조

### □ 사업주관기관

- 축산물등급판정소(☎031-390-5561), 농협중앙회(☎02-2080-6541)
  - 축산물등급판정소 : 사업총괄, DB관리, 유통단계, DNA동일성검사 등
  - 농협중앙회 : 농가귀표 관리, 생산단계 지도점검 등

### □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축산물위생과(02-500-1925~6)
- 시·도 : 축산업무 담당과
- 시·군 : 축산업무담당과

### □ 신청기관 : 시·군

## 산지축산물생산·유통지원사업

사업목적

- 브랜드 축산물의 생산·유통을 선도할 우수 브랜드 육성으로 국내산 축산물의 시장차별화 및 경쟁력 제고
- 규모화·전문화된 생산조직을 중점적으로 육성·지원하여 축산농가의 안정적 판로확보 및 소득보전

지원대상 : 지역농·축협, 영농조합 등 축산물브랜드경영체

사업내용

- 우수 축산물브랜드 육성을 위한 운영자금 지원
- 축협조합 경제활성화를 위한 운영자금 지원

자금유형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합계	예산액			지방비	자부담
		소계	보조	융자		
-	174,000	144,655	-	144,655	-	29,345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융자(축발기금 80%, 자부담 20% Matching Fund 구성)
- 연리 3%, 3년 거치 일시상환 (인센티브 자금 : 무이자, 1년)

사업주관기관 : 시·도, 농협중앙회

신청기관 : 시·도, 농협중앙회

## 가축계열화사업

### □ 사업목적

- 전문경영체 중심의 생산·가공·유통의 일관경영으로 양축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토록 함으로써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 등 안정적인 축산경영도모

### □ 지원대상

- 가축계열화 사업자의 범위 및 지정방법(농림부고시 제2003-10)에 의거 계열화 사업자로 지정된 자

#### <제한사항>

- 닭·오리 신청업체 또는 생산시설이 없는 유통업체의 경우 2년이상 자체 계열화 사업실적(사업신청 직전년도 계약생산 실적이 돼지는 30천두, 닭은 500천수, 오리는 200천수 이상)이 있어야함
- 계열참여 농가는 축산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업 등록을 하여야함
- 농업법인(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등)은 농림사업실시규정 별표3의 지원요건을 충족하여야함
- 브랜드육성사업 등 타사업을 통해 경영자금 등 사육비와 동일한 성격의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환 완료시까지 계열화사육비 지원불가(단, 시설비는 지원가능)

#### <우선지원 요건>

- 완전계열화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자
- 축산물종합처리장 및 동 처리장과 연계하여 계열화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자
- 축산단지 등 기존시설과 연계·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자
- 도축장, 사료공장, 종돈장, 육가공장 및 유통판매 시설중 2종이상을 보유한 계열주체
- 계열화사업을 지정받은 자로서 재해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자

### □ 사업내용

- 자금지원대상자 : 가축계열화 사업자
- 대상축종 : 돼지, 닭, 오리

자금유형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사업비합계	예산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7개소	35,715	25,000	-	25,000	-	10,715

지원조건

① 계열주체에게 직접 지원하는 경우

- 사업비는 계열주체의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예산규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이미 지원받은 업체는 당초 계획대로 사업추진이 완료된 경우에만 한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신규사업 신청절차 및 방법에 의함.
  - 사업완료 예정년도에 추가사업비를 신청할 수 있으나 연말까지 미완료시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계열주체에게 계열화사육비를 지원할 경우 사업 주관기관은 계열주체의 사육·출하두수 등을 고려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자금지원액 결정 가능

② 계열주체를 통해 계열농가 생산시설을 지원하는 경우

- 계열농가 생산시설은 축산종합자금사업의 시설자금지원 또는 가축계열화사업에 포함하여 계열주체를 통해 지원할 수 있으며, 계열주체를 통하여 지원할 경우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대상농가를 선정하여야 함.
  - 계열농가가 계열주체를 통하여 생산시설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축산종합자금제 시설지원의 일반농가 지원내용과 동일 적용하되 계열주체의 신용보증 등으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함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축산경영과(돼지:☎02-500-1995, 닭·오리:☎02-500-1907)
- 시·도 : 도 축산과, 광역시 농정과(축산계)
- 시·군·자치구 : 축산과 또는 축산담당(축산계)

신청기관 : 시·군·구

## 우수축산물브랜드인증사업

사업목적

- 변화하는 축산물 유통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일반브랜드와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 소비자가 요구하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고품질축산물 생산을 위한 우수축산물브랜드 인증 및 육성

지원대상 : 축산물브랜드경영체

사업내용

- 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위원회 구성·운영
- 브랜드인증 신청업체 현지실사를 통한 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
- 축산물브랜드 종합정보서비스(자가진단프로그램)를 활용하여 브랜드 관리
- 우수 축산물브랜드 소비홍보대회를 개최하여 인증브랜드 발표 및 홍보

자금유형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예산액			융자		
		소계	보조	융자			
1개소	150	150	150				

지원조건

- 지원형태 : 보조 100%
- 지원조건 : 정액지원

사업주관기관 : 소비자단체

- 사업시행기관 : 축산물등급판정소(☎031-390-5500)

신청기관 : 소비자시민모임 및 축산물등급판정소

## 축산물브랜드컨설팅지원사업

사업목적

- 브랜드 경영체의 경영, 재무, 마케팅 등 애로사항에 대한 전문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경영체의 시장지향성 강화·경쟁력 제고 및 축산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장 도모

지원대상 : 브랜드사업(산지축산물 생산유통지원사업) 선정 경영체

사업내용

- 브랜드경영체의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컨설팅 비용 일부 지원

자금유형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합계	예산액			지방비	자부담
		소계	보조	용자		
10개소	1,000	500	500	-	200	300

지원조건

- 사업단가 : 1억원 이내(사업비가 초과하는 경우 자부담으로 충당)
- 지원비율 : 축발기금보조 50%, 지방비20%, 자부담30%

사업주관기관 : 시·도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축산국 축산물위생과(☎02-500-1295~7)
- 시·도 : 축산담당부서(축산과, 축산행정과 등)

신청기관 : 시·도

##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사업목적

- 축산물 HACCP 적용확대에 따라 HACCP 준수를 원하는 영업자 등에 자체 기준서 작성·운용 등에 관한 전문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HACCP 제도의 조기정착 유도 및 축산물 위생·안전성 확보

지원대상

- 돼지·소 사육농가와 식육판매업소 중 HACCP 적용희망 농가(영업자)

사업내용

-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농가(영업자)에 대해 전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비용의 일부 보조

자금유형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사업비 합계	예산액(축발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HACCP 컨설팅지원	60개소	600	300	300	-	-	300

지원조건

- 개소당 10백만원(기금보조 50%, 자부담 50%)

사업주관기관 : 시·도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축산물위생과(☎02-500-1923~4)
- 시·도 : 농수산유통과, 농업행정과, 농수산유통과, 농정과, 농축산과, 축산과, 축정과, 축산경영과 등

신청기관 : 시·군·구(1월말까지 신청서 제출)

## 가축공제사업

### □ 사업목적

- 자연재해(수해, 풍해 등) 및 화재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시 이를 보상하여 축산경영의 계획화와 양축가 소득보장
-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재생산 여건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양축기반 조성
- 전염병의 조기 발견 및 축사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등으로 재해예방

### □ 지원대상

- 대상 : 소(생후 2개월령 이상), 말(종빈말, 종모말), 돼지, 가금(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사슴, 타조, 거위
  - \* 단, 축산업등록제 등록대상으로 미등록 농가는 지원 제외
  - 가축공제사업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가는 가입 신청시 축산업등록증 첨부(축산업등록대상 농가에 한함)
  - 축산업등록대상자 : 소·닭·오리는 가축사육시설 300㎡이상 농가, 돼지는 50㎡이상인 농가

### □ 사업내용

- 공제가입금액 : 가입자 자율결정
- 공제가입기간 : 1년단위(월 단위도 가능)
- 공제요율 : 추후 사업시행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 농가 납입공제료 중 50% 정부보조(자부담 50%)

### □ 지원조건

- 농가 납입공제료의 50% 보조(자부담 50%)

### □ 사업주관기관

- 농협중앙회(농·축협 조합 포함), LIG·현대·동부·삼성 컨소시엄

### □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축산정책과(☎02-500-1897)

### □ 신청기관

- 농협중앙회(농·축협 조합 포함), LIG·현대·동부·삼성 컨소시엄



## 학교우유급식사업

사업목적

- 학교우유급식을 통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의 식생활개선 및 체력증진
- 우유 소비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

지원대상

- 374천명(초등학생 216, 중학생 86, 고등학생 72)
- 국민기초생활수급보장 대상 가정 및 모·부자 가정의 초·중·고등학생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지역 여건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초·중·고등학생 (특수학교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포함)

사업내용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우유를 급식하고 급식 유업체에 급식비 지급
- 급식일 : 250일 기준(방학중 급식 포함)
- 사업기간 : '07.1.1 ~ 12.31

자금유형

(단위 : 천명/ 일,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축산발전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학교우유급식	374	25,245	17,672	17,672	-	7,573	-

지원조건

- 지원조건 : 보조 100%(국비 70%, 지방비 30%)
- 지원단가 : 270원/200ml

사업주관기관 : 시·도(또는 시·군·자치구)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축산국 축산경영과(☎02-500-1909~10)
- 시·도 : 축산업무 담당과
- 시·군·자치구 : 축산업무 담당과

신청기관 : 시·군·구

##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 □ 사업목적

-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친환경농업 실천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 농약·화학비료 사용량 감축과 축산분뇨 자원화를 통한 농업환경 유지·보전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계 구축

### □ 지원대상

- 농경지가 10ha 이상 집단화 되고, 참여농가가 10호 이상인 지역으로서, 사업계획서 평가기준(붙임6) 점수가 60점 이상인 지역
- 대상자
- 친환경농업지구조성을 희망하는 지역(마을)에서 사업을 원하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3조 내지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 적합할 것)
- 작목 : 벼·일반 밭작물·채소·과수·특작·축산 등 전작목(화훼류는 제외)

### □ 사업내용

- 친환경농산물 농자재 및 생산시설·장비, 유통시설·장비, 친환경농업 기술지도·교육 관련시설·장비
- 하우스, 축사 등 개별 생산시설·장비는 총 사업비의 20% 범위 이내에서만 투자가능
- 지방자치단체의 별도재원으로 개별시설 지원가능

### □ 지원조건

- 지원단가 : 지구당 200~1,000백만원 범위내에서 차등지원
- 지원조건 : 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 □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식량정책국 친환경농업정책과 (☎02-500-1810~1)
- 시·도 : 농정담당부서(친환경농정과·농산지원과·농산유통과 등)
- 시·군 : 농정담당부서 (친환경농업과·산업과·농정과 등)

### □ 신청기관 : 시·군

##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

### □ 사업목적

- 시설원예작물의 합성농약에 의한 해충방제를 천적을 활용한 생물학적 방제방법으로 전환하여 농약사용량을 줄이고,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의 친환경농산물 수요 충족, 실천농가의 소득증대 · 노동력절감 및 농약피해로부터 농업인의 건강보호

### □ 지원대상

- 대상작목 : 딸기 · 토마토 · 파프리카 · 고추(피망) · 오이 · 메론 · 포도
- 지원대상자 : 천적활용 해충방제가 가능할 정도의 환경제어를 할 수 있는 1,000평 이상의 시설에서 지원대상 작목을 재배하는 농업인 ·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다만, 집단화된 원예단지에 속해 있는 다수농가가 천적활용 해충방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00평 미만의 시설재배농가도 지원 가능
- 지원대상자는 연속 또는 비연속으로 3년차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나, 1년차 사업을 지원받으려면 천적활용 해충방제 경험이 있거나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 사업내용

- 유럽 등 농업선진국에서 시설원예작물 해충방제수단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천적을 활용한 해충방제를 국내 농업에 도입하기 위해 1995년부터 농촌진흥청이 천적연구실을 설치하고 천적연구와 시험포운영 등을 통해 도입기반을 조성하여 왔으며, 민간역량의 신장으로 천적방제 토대 마련
- 친환경농업 추진으로 화학비료사용량은 감소추세이나 원예작물에 대한 농약사용량은 증가추세에 있어 농약사용량 감축을 위해 국제적으로 검증된 천적을 활용한 생물학적방제법 도입

□ 자금유형

(단위 : 백만원)

	사업비합계	예산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용자		
1,000ha	7,300	3,650	3,650	-	2,190	1,460

□ 지원조건

- 지원단가 : 1ha당 7,000천원(단, 딸기는 1ha당 6,000천원)
  - \* 천적방제대상 작물의 ha당 실제 방제비용이 7,000천원 미만일 경우는 실제방제비용을 적용하여 1ha당 단가를 산출하여 보조금 지원
  - \* 천적방제대상 작물의 ha당 실제 방제비용이 7,000천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000천원까지만 보조금을 산출하여 지원하고 추가비용은 농가가 부담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농림부 : 시행지침 시달, 시도별 예산배정·자금교부, 홍보
- 시·도지사 : 예산신청, 시·군 예산통지, 시·군 지도감독 및 사업결과정산 등
-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신청접수, 사업자선정 및 지도·감독, 사업비정산 등

□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친환경농업정책과 (☎02-500-1810~1, Fax 507-2096)
- 시·도 : 농정담당부서 (친환경농업, 농산, 농산지원, 농산유통 등)
- 시·군·구 : 농정담당부서

□ 신청기관 : 시·군·구

## 농업종합자금지원사업

### □ 사업목적

- 품목별·기능별 분산 지원되는 농업분야 용자자금을 통합·관리하여 농업 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종합지원 함으로써 농업정책자금의 효율성 제고

### □ 지원대상

- 해당분야의 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금융기관의 대출심사·평가를 통해 사업수행능력과 사업타당성을 인정받은 농업인, 개토 희망농가,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있는 농업법인, 기타 가공업자, 농기계생산업자 및 농기계보관창고업자, 종자산업법에 의한 종자업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개인육종가

### □ 사업내용

- 시설·개보수, 운영자금, 농기기계구입자금(10백만원이상)을 일괄 지원하고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금액을 필요한 시기에 지원

### □ 자금유형

- 사업규모(용자) : 1,026,100백만원

### □ 지원조건

- 금리 : 연리 3%
- 상환조건 : 시설 3~5년 거치 10년, 개보수 2년 거치 3년, 농기계 구입 1년 거치4~7년, 운전 2년 이내

□ 사업주관기관 : 농협중앙회

□ 사업담당부서 : 협동조합과 (☎02-500-1692)

□ 신청기관 : 농업종합자금취급사무소(농협 시·군지부)

## 농업경영체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사업목적

- 농업법인의 경영정보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효율적 경영 유도

지원대상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중
  - 결산서(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연간매출액 10억 이상이며, 정보시스템 구축 개발비의 30% 자부담이 가능한 자
    - ※ 다만, 시·군에서 경영능력이 우수하고, 정보시스템 구축 의지가 강한 법인에 대해 연간매출액 5억 이상도 포함

사업내용

- 농업법인의 작업·구매·판매·정산 등 영농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계획서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
- 추진절차 : 지원대상 선정(시군) → 개발업체 선정(농림수산정보센터 지원) → 컨설팅 계약(시군·농업법인·개발업체) → 컨설팅 실시(2개월, 개발업체) → 정보시스템구축 계약(시군·농업법인·개발업체) → 정보시스템구축(3개월, 개발업체) → 유지보수(1년 무상)

자금유형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 백 만 원 )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정보시스템 구축	15개소	450	180	180	-	135	135

지원조건

- 국고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컨설팅 및 사업계획서 수립비 : 법인별 5백만원
- 개발비 지원한도(유형별 차등 지원)
  - 채소(1차가공), 과수(2차가공), 식량작물 : 30백만원
  - 채소(유통), 과수(유통), 특용작물, 화훼 : 20백만원

사업주관기관 : 도(시·군)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정보화기획팀(☎02-500-1631/3), 도(시·군) 농정과

신청기관 : 시·군

## 농업인 홈페이지 운영활성화 지원

사업목적

- 기존 농업인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를 통한 전자상거래 확산

지원대상

- 농림부, 지자체,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이 지원한 홈페이지 농가

사업내용

- 농업인 홈페이지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농가 발굴과 벤치마킹 기회 제공
-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필요한 교육 지원(농업인 정보화교육 활용)
- 농업인 홈페이지 운영관리 및 신규 홈페이지 구축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한 유료화 지원(농림수산정보센터 자체사업으로 추진)
- 온·오프라인을 통한 우수 농업인 홈페이지 홍보

자금유형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홈페이지 운영	-	315	315	315	-	-	-

지원조건

- 국고보조 100% (민간경상보조)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정보화기획팀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정보화기획팀(02-500-1631/3)

(재)농림수산정보센터 전자상거래팀(031-460-8940/89)

신청기관 : (재)농림수산정보센터 전자상거래팀

## 농업인 정보화교육사업

사업목적

- 농업인의 수준별 맞춤 정보화교육으로 농업인 정보활용능력 향상

지원대상 : 농업인

사업내용

- 컴퓨터·인터넷 및 농업정보 활용교육
  - 읍·면 단위 지역농협, 시·군 단위 농업기술센터가 담당(집합교육)
- 농업경영정보전문교육
  - 22개 농업계대학과 공모로 선정된 전문교육 기관이 담당(집합교육)
  - 생산이력관리, 전자상거래 마케팅, 농가경영정보관리 등 전문교육 실시
  - 중기과정 : 5~10일(30시간), 공모과정 : 3~6개월(60시간 이상)
  - 이론교육, 세미나, 워크샵, 현장학습 등 병행
- 농업정보119 방문교육 : 전국 농업계대학이 담당(농가방문교육)
  - 홈페이지 구축 농가 및 농업용 S/W 활용농가 등 방문교육 실시
- 이동버스정보화교육 : 정보화교육을 필요로 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노트북을 탑재한 버스가 신청 마을을 방문(18시간)하여 교육 실시
- 온라인교육([www.eduaffis.net](http://www.eduaffis.net)) : (재)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가 담당
  - 기초 17개, 중급 9개, 전문 21개, 교관교육 4개 등 총 51개 과정

자금유형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사업비 합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사항기관)
			계	보 조	용 자		
정보화교육	25천명	2,827	2,635	2,635	-	-	192

지원조건 : 국고보조 100%(단, 농협은 50%)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정보화기획팀(☎02-500-1631/3)

(재)농림수산정보센터 정보교육팀(☎031-460-8910~14)

교육시행기관 : 농업기술센터, 지역농협, 농업계대학, 전문교육 공모 기관(농업연수원 등 교육전문기관), 농림수산정보센터

신청기관 : 교육시행기관



## 농업·농촌 정보화선도자 선정 및 활용사업

사업목적

- 정보화능력을 갖추고 농촌에 거주하는 자를 정보화선도자로 지정하여, 상시적으로 인근 농업인에 대해 정보화교육 실시

지원대상 : 농업인

사업내용

- 정보화선도자 선정 : 해당 시군에서 공모를 통해 컴퓨터 활용능력을 갖추고 인근 농업인 대상 정보화 기초교육이 가능한 자를 선발
  - 정보화선도자 개별 자료를 DB구축·관리하고, 등록된 선도자는 반드시 온라인 인증과정을 거쳐 최종 승인
  - 도지사가 발급하는 위촉장을 수여하고, 2년 주기로 재위촉 절차를 거쳐 선도자 자질과 역량을 주기적으로 확인
- 정보화선도자 역할 : 인근 농가에 대해 1:1 맞춤교육 실시, 마을단위에 설치된 정보화 시스템운영 책임자, 정보화 교육 강사, 동호회 오피니언 리더 등 농촌지역 정보화 확산과 촉진을 위한 메신저 활동
- 실교육 시간에 한하여 1회 2시간 이상, 2만원 지급
  - 월 최대 30회, 1일 3회, 동일농가는 월 5회 이내로 제한
- 교육내용 : 컴퓨터 기초, 윈도우 사용법, 문서작성 활용, 동영상 활용하기, 인터넷 접속, 농업정보활용 등

자금유형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사업비 합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시행기관)
			계	보 조	용 자		
정보화선도자 선정·활용	34.8천명	900	450	450	-	450	

지원조건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사업주관기관 : 도(시·군)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정보화기획팀(☎02-500-1631/3)

도(시·군) 농정과, (재)농림수산정보센터 정보교육팀

신청기관 : 시·군

## 농림기술개발사업

### □ 사업목적

- 산업화 기술개발 지원으로 농림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기술력을 성장동력원으로 하는 농산업 육성하기 위한 농림기술의 개발과 첨단 과학 등을 응용하여 농림업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
- 개발된 첨단기술을 농림산업 분야에 접목시켜 고부가가치 농림축산물 및 신상품·신공정을 개발함으로써 시장개방에 대응한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술개발

###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농산업체, 대학, 연구·지도기관, 농민(단체)등 산·학·연 협동연구팀
  -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로서 기술개발 능력(연구인력 및 시설 등)을 보유한 기업 또는 창업자

### □ 사업내용

- 기획과제
  - 농정목표달성을 위해 시급히 개발해야할 과제 및 기술수요가 많고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을 정부가 지정공모한 후 기술개발 지원
  - 품목, 성과물 및 수요자 중심의 기술개발을 조직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장기 연구개발사업으로, 산·학·관·연 기술개발 협력체를 구축하여 기술개발을 수행
- ※ 정부제안 및 미래유망기술 중에서 도출된 과제를 지정공모

○ 일반과제

- 농업경영체 및 농산업체의 산업화 적용기술과, 생명공학 등 농림업 관련 첨단기술을 개발하거나 또는 다른 산업분야에서 개발된 기술을 농림업에 접목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지원
- 농림업관련 기업체의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제로서 산업화 가능성이 인정되고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실용화 기술개발하기 위해 지원(신품종육성기술 등 포함)

※ 연구개발자가 과제를 발굴하여 제안

□ 자금유형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사업비 합계	예산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42,574	42,574	42,574	-		

□ 지원조건

- 연구개발비 : 국고출연
- 기업참여시 연구개발비 부담비율
  - 대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50%이상
  - 중소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25%이상

□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 사업담당부서 : 농생명산업정책과(☎02-500-1797~8)

- 사업관리담당기관 : 농림기술관리센터(연구관리전문기관)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943 대신증권빌딩 4층
  - ☎02-2041-7513~5 (FAX : 02-2058-0068)

□ 신청기관 : 농림기술관리센터(www.arpc.re.kr)

# 새기술보급시범사업

## □ 목 적

-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새로운 기술·품종·기계 등을 신속하게 보급하여 식량작물의 안정생산과 소득작목의 주년생산으로 국민생활의 안전을 도모
- 농약, 화학비료 등 시용량 절감 기술보급을 통한 환경농업 실천과 가축분뇨 정화 개선을 통한 환경오염 방지
- 농업·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소득원 개발 및 농작업 환경 개선으로 농촌생활의 질 향상

## □ 지원대상

- 시범사업 참여 의지가 강하여 파급효과가 큰 농업인이나 농업인 단체
- 기술 낙후지역으로 새기술의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지역
- 농축산물 수입개방 대응을 위한 작목대체가 필요한 지역

## □ 사업내용

- 새로운 농업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시범사업 : 40개 사업
  - 식량작물분야 9사업, 소득작목시범 21사업, 환경보전농업 4사업, 농촌 생활과학화 시범 6사업
- 식량작물분야
  - 벼농사 : 고품질 쌀 생산 유통, 쌀 품질관리 기술, 최고 쌀 생산단지
  - 밭·특용작물 : 밭작물작부체계개선, 우량 인삼생산 해가림, 특용작물 상품화 향상, 느타리버섯 배지제조 생력화, 느타리버섯 비닐 멀칭 환경개선, 고품질 누에 수번데기 생산기술
- 소득작목분야
  - 채소 : 딸기 우량묘 생산, 채소연동형하우스 에너지절감 패키지와, 민속채소실증, 유기농채소실증, 마늘큰주아생산, 연작방지 친환경 토양관리, 시설채소단동하우스 생력화,
  - 과수 : 감귤 표준 과원조성, 축열물주머니 이용 시설과수 재배, 과수 재해예방 시설 보급, 과원 친환경 관비시스템, 생력화 과원 조성, 야생동물 피해방지

- 화훼 : 원예활동생활화, 화훼 직무육성품종, 온실관리 자동화, 시설 화훼 난방비 절감
- 축산 : 안전고품질 축산 생산, 양질 조사료 생산이용, 가축방역 생력화, 한우고기 경쟁력 향상, 안정화 음이온 이용 양계 생산
- 환경보전농업분야
  - 병해충 방제 :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보급
  - 친환경 농업 : 친환경 종합 시범단지
  - 축산 환경개선 : 가축분뇨 처리 효율 개선, 농가형 광합성 미생물 배양 약취 제거
- 농촌생활과학기술 분야
  - 소득원 제품 유통개선, 전통식품천연염료염색, 농작업환경개선 보조시범(농작업환경개선보조 기구, 농산물선별작업장개선), 전통규방공예품제조, 환경 친화형 농촌주거모델

자금유형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일반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1,083개소	백만원 25,012	12,506	12,506	-	12,506	-

지원조건

- 지원금액 : 지원규모 및 내용은 2007년 농촌지도사업 기본지침에 의거 별도로 정함

사업주관기관 : 농촌진흥청

사업담당부서

구 분	농촌진흥청 기술지원국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식량·특용작물 시범	친환경기술과 (☎031-299-2701)	기술보급과 등	기술보급과 등
소득작목 시범	소득개발기술과 (☎031-299-2741)	기술보급과 등	기술보급과 등
환경보전 농업기술 시범	친환경기술과 (☎031-299-2701)	기술보급과 등	기술보급과 등
농촌생활과학기술보급시범	농촌자원과, 농촌생활과 등 (☎031-299-2671,2872)	생활개선과, 농촌지원과 등	농촌지원과 등

신청기관 : 농업기술센터

## 농업인전문교육사업

### □ 목 적

- 농업인에 대한 영농단계별 전문교육 추진으로 영농현장의 애로기술 해결능력 배양
- 농업 전문인력 육성으로 지역사회 기반유지 및 활성화에 기여
- 농업 경쟁력 제고 및 지역사회 발전의 선도 실천자로서 능력배양

### □ 지원대상

- 분야별 교육 참석희망 농업인

### □ 사업내용

- 전문 농업인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 새해영농 설계교육 또는 품목별농업인교육, 특성화 농업경영자교육, 농업인 수출품목 교육,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육성, 지역농업교육 협력체 사업, 우수농산물관리제도

### □ 자금유형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사업비 합 계	예산액(균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용자		
206천명	5,644	2,822	2,822	-	2,822	-

### □ 지원조건

- 과정별 교육이수를 위한 자금의 간접 지원

### □ 사업주관기관 : 농촌진흥청

### □ 사업담당부서

- 농촌진흥청 : 농촌지원국 지원기획과(☎031-299-2660)
- 도 : 농업기술원 지원기획과·팀
- 시·군 :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팀·담당

### □ 신청기관 : 농업기술센터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 사업목적 : 영농정착의욕이 높은 젊은 인재를 적극 발굴,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미래농업을 선도할 정예인력육성, 우리농업의 지속성 확보
- 지원대상
  - 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 : 병역필·면제자,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및 여성으로서 사업시행년도 1월1일 현재 35세미만인 자중 영농에 종사하기(영농승계 포함)를 원하거나 독립하여 영농에 종사한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신규후계농업경영인 : 병역필·면제자,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및 여성으로서 사업시행년도 1월1일 현재 45세미만인 자중 영농에 종사하기(영농승계 포함)를 원하거나 독립하여 영농에 종사한지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지원조건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0%, 농협자금 70%
  - 금리 및 용자기간 : 연리 3.0%, 국고용자 100%,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15년)
- 지원단가
  - 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 : 본인들의 영농설계에 따라 20백만원~2억원 까지 차등지원
  - 신규후계농업경영인 : 본인들의 영농설계에 따라 20~50백만원까지 차등 지원
- 사업량
  - 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 : 1,000명, 63,000백만원
  - 신규후계농업경영인 : 400명, 20,000백만원
-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 농업구조정책국 경영인력과(☎02-500-1679~80)
  - 시·도 : 농정담당부서(농업정책과, 농정유통과)
  - 시·군 : 농정담당부서 또는 농업기술센터
- 신청기관 : 시·군 또는 농업기술센터

## 농업인턴제사업

- 사업목적 : 선도농가 실무연수를 통한 잠재농업인력의 영농정착 등 기부여로 농업부문 신규인력 유입 촉진
  
- 지원대상
  - 사업시행년도 1월1일현재 만18~44세의 미취업 자 또는 사업시행년도 3월 31일 현재 농업계 고등학교에 3학년으로 재학중인 자 및 농업계 대학에 재학중인 자
  
- 사업내용
  - 지원방식 : 인턴을 채용한 선도농가에서 자금지원(인턴 1인당 월60만원 한도, 월보수의 50% 이내로 연간 6백만원 지원)
  
- 사업량/지원조건 : 100명, 420백만원(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 농업구조정책국 경영인력과(☎02-500-1679~80)
  - 시·도 : 농정담당부서(농업정책과, 농정유통과)
  - 시·군 : 농정담당부서 또는 농업기술센터
  
- 신청기관
  - 시·군 또는 농업기술센터



## 창업농후견인제사업

- 사업목적 : 창업후계농업인의 영농시 문제해결 지원으로 안정적 영농 정착과 경영혁신
  
- 지원대상
  - 2003년도~2007년도에 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영농정착 자금을 지원받은(예정인)자
  
- 사업내용
  - 지원방식 : 창업농을 후견하는 후견인에 대해서 소요비용 및 서비스 대가로 창업농 1인당 월 50만원 한도로 자금 지원
  
- 사업량/지원조건 : 100명, 350백만원(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 농업구조정책국 경영인력과(☎02-500-1679~80)
  - 시·도 : 농정담당부서(농업정책과, 농정유통과)
  - 시·군 : 농정담당부서 또는 농업기술센터
  
- 신청기관
  - 시·군 또는 농업기술센터

##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

- 사업목적 : 우수한 후계농업경영인의 영농규모 확대 및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유능한 미래 농업 전문인력의 체계적 확보·유지에 기여
- 지원대상
  - 선정후 5년 이상 경과된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현재 영농에 종사중인 농업인
  - ※ 신청기간 : '07.2월말까지
- 사업내용
  - 지원방식 : 지원대상자의 영농설계에 따라 8천만원까지 지원
    - 단, 사업예산에 따라 8천만원 이하로도 지원될 수 있음
- 사업량 : 지원인원 1,500명, 1,200억원
- 지원조건 : 연리 3%, 융자 100%,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 농업구조정책국 경영인력과(☎02-500-1679~80)
  - 시·도 : 농정담당부서(농업정책과, 농정유통과)
  - 시·군 : 농정담당부서 또는 농업기술센터
- 신청기관
  - 신청자의 주요 영농종사지역의 시·군
  - 각 시·군은 여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에서 신청 접수 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 내용을 각 시·군 및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 등을 통해 공지

##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 □ 사업목적

- 농어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안정 및 농업생산성 제고에 기여하고, 젊은층의 농어촌거주 유도 및 농어촌 지역사회 활력유지

### □ 지원대상

- 아래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 1)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 2) 농지소유면적 합계가 5ha 미만 등의 농가
  - 3) 만5세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아를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 4) 대상아동의 부모중 1인 이상이 전업적 직업없이 농업활동에 실제 종사
    - ※ 지원제외 대상 : 타부처 지원대상 아동 및 사업장으로부터 직장보육시설 미설치에 따른 보육수당을 받는 아동

### □ 사업내용

- 대상아동에 대한 보육시설 보육료 및 유치원 교육비의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월/인)
  - 보육시설 이용 아동 : 0세 253천원, 1세 222, 2세 183, 3세 126, 4세 113, 5-6세 162
  - 유치원 취원아 : (국공립) 3-4세 39천원, 5-6세 56, (사립) 3세 126천원, 4세 113, 5-6세 162

### □ 자금유형

- 보조사업 : 사업비 53,564백만원(국비 26,782, 지방비 26,782)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업구조정책국 여성정책과(☎02-500-1605~6)
- 시·도 : 농정업무담당부서
- 시·군·구 : 농정업무담당부서

□ 신청기관 : 신청서에 이·통장의 확인을 받아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

##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사업

### □ 사업목적

- 여성농어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육아지원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 보장과 농업생산성 제고에 기여하고, 젊은 층의 농어촌 거주 유도 및 농어촌 지역사회 활력유지

### □ 지원대상

- 아래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 1)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 2) 농지소유면적 합계가 5ha 미만 등의 농가
  - 3) 만5세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아 자녀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 4) 대상아동의 부모중 1인 이상이 전업적 직업없이 농업활동에 실제 종사

※ 지원제외 대상 :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이용 아동 및 사업장으로부터 직장보육 시설 미설치에 따른 보육수당을 받는 아동

### □ 사업내용

- 대상아동에 대한 가정육아비용의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월/인)
  - 0세 126천원, 1세 111천원, 2세 92천원, 3세 63천원, 4세 57천원, 5-6세 81천원

### □ 자금유형

- 보조사업 : 사업비 47,922백만원(국비 23,961, 지방비 23,961)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업구조정책국 여성정책과(☎02-500-1605~6)
- 시·도 : 농정업무담당부서
- 시·군·구 : 농정업무담당부서

□ 신청기관 : 신청서에 이·통장의 확인을 받아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

## 농촌출신 대학생학자금 용자사업

사업목적

- 농어촌출신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용자하여 농어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 및 교육기회 균등 도모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로서 고등학교법 제2조의 학교 중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기능대학 포함), 기술대학 및 과학기술원 등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지원제외 또는 지급중지 대상

- 국가, 보호자의 직장, 학교 등으로부터 학자금의 보조, 용자 등 이미 수혜를 받고 있는 경우(단, 등록금 범위 내에서 차액만 신청 가능)
- 정부보증학자금대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등 수혜자는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음
- 정학이상의 징계처분, 휴학 및 전학, 자퇴한 경우
- 지원받은 학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때
- 학자금 수령을 목적으로 한 위장 전출·입 등 기타 학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사업내용

- 등록금 한도 내에서 신청한 전액을 무이자로 용자 지원, 상환은 졸업 후 1년 거치 한학기 용자금을 1년 단위로 상환

자금유형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사업비 합계	예산액			융자		
		계	보조	융자			
26천명	74,672	74,672	-	74,672	-	-	

지원조건 : 융자 100%

사업주관기관 : 한국학술진흥재단 장학지원팀(☎02-3460-5636~7)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농촌사회과(☎02-500-2087)

신청기관 : 한국학술진흥재단, 각 대학 장학담당부서

##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 □ 사업목적

-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하여 농가의 경영능력 향상

### □ 지원대상

- ①원예·특작 : 3,000m<sup>2</sup>이상, ②공동마케팅조직, 산지유통전문조직(「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상위 25% 이내 조직에 한함),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③가공 : 매출액 2억원 이상, ④한우·젓소 50두 이상, ⑤돼지 1천두 이상, ⑥양계 2만수 이상, ⑦미곡종합처리장(RPC), ⑧쌀전업농, ⑨지역농업클러스터, ⑩농촌관광 ⑪친환경(유기)농업, ⑫농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⑬농지은행에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비를 지원 받은 농가, ⑭경영혁신, 일부 경영자문 희망 농업법인, ⑮자연순환농업

### □ 사업내용

- 농가와 업체간 계약을 체결토록 하여 컨설팅을 실시하면 국가와 지자체에서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보조 지원
- 지원한도 : 개별농가 15백만원 이하, 법인·업체 : 30백만원 이하
- 지원자금의 용도 : 컨설팅 업체의 자문비용

### □ 자금유형

- 보조사업 : 사업비 8,640백만원(국비 4,320, 지방비 1,728)

###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1, 2년차 지원에 한함)  
- 3년차 : 국비 40, 지방비 10, 자부담 50%(4년차 이후 : 자부담)

###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업구조정책국 경영인력과(☎02-500-1684~5)
- 시·도 : 농정업무담당부서
- 시·군·구 : 농정업무담당부서

### □ 신청기관 : 시·군·구

#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사업목적

-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을 통해 마을단위 농산어촌체험 관광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활성화 도모
- 농산어촌체험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마을 대표 등의 업무 부담 경감 및 인력부족 문제 보완

지원대상

- 협약에 따라 마을사무장을 채용한 농산어촌체험마을
  - \* 단, 어촌체험마을의 경우 해양수산부에서 '07년 예산을 확보할 경우 우리부 지원대상에서 제외

사업내용

- 농산어촌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한시적으로(최대 3년간) 마을사무장 채용비용의 일부를 지원
- 채용된 사무장은 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마을사무관리 등 농산어촌체험관광사업 활성화 도모를 위한 업무를 추진
- 마을, 사무장, 시장·군수 3자간에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 이행 점검·평가에 기초하여 보조금 지급

자금유형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사업비 합계	예산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150명	1,800	900	900	-	720	180

지원조건 : 마을사무장 1인당 월 100만원

(국고 50%, 지방비 40%, 마을자부담 10%)

- ※ 단, 지역별 형편에 따라 지방비 및 마을자부담 지급비율은 조정 시행 가능하며, 지자체 또는 마을에서 월100만원을 초과하여 추가지원 가능
- ※ 국고보조금은 최대 월50만원 한도내 지원함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촌정책국 농촌진흥과 (☎02-500-1967)
- 시·도 : 농업정책과, 농어업정책과, 농정과, 농정유통과, 농업기반정책과, 친환경농업과(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담당과)
- 시·군 : 농정업무 관련과(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담당과)

신청기관 : 시·도

##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지원사업

사업목적

- 농촌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 및 가족에 대한 언어교육, 문화교육 및 가족관계 증진교육 등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지원하여 여성농업인으로 육성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
- 지원제외
  - 타부처(여성가족부, 지자체 등)에서 실시하는 한국어 교육을 받고 있거나, 이미 교육을 받은 경우는 제외. 단, 방문교육 필요 가정은 대상에 포함
  - 남편 등 가족들이 방문교육 등 지원을 거부할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찾아가는 우리말 교육을 위한 방문 교육도우미 지원 및 소그룹 문화교육 등
  - 1,800명에게 5개월 과정으로 운영 (3시간/주, 총 50~60시간)
- 부부교실, 가족캠프, 모국방문, 선진영농협장 견학 등 가족통합교육과 모범가정 격려 지원 등
- 사업실시 지역 : 사업희망 30개 시·군

자금 유형

내 용 별	사 업 량 지원대상	사 업 비		
		합 계	국 고	지 방 비
교육도우미 운영비	30명	2,156	1,562	594
- 도우미 수당		1,980	1,386	594
- 도우미 교육 등		176	176	
부부교실, 가족캠프 등	30시군	268	188	80
교재비, 홍보비	30시군	173	173	
합 계		2,597	1,923	674

지원조건 : 농특회계, 자치단체경상보조(국고70%, 지자체 30%)

사업주관기관 : 도지사, 시장·군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여성정책과(02-500-1607, 1609)
- 도 및 시·군 : 농정부서

신청기관 : 시·군·읍·면



##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 □ 사업목적

-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은퇴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쌀전업농의 영농규모 확대를 촉진함으로써 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

### □ 지원대상

- 연령은 신청년도 12월 31일 현재 63세 이상 69세 이하인 자(2007년도의 경우 1938년 1월 1일~1944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
- 영농경력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일 이전 10년이상 벼농사를 경작
  - 선정신청일로부터 3년전인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 계속하여 벼농사를 경작

### □ 사업내용

- 지급약정 체결 전일까지 소유하고 있는 답을 한국농촌공사 또는 55세이하의 농업인에게 매도하거나 5년이상 임대(“사용대 포함”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농업인에게 ha당 일정금액을 지급
- 지급약정 체결이후 경영이양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단계별 경영이양계획서를 공사에 제출 (농업진흥지역안의 답은 1년, 그 밖의 답은 3년내)

### □ 자금유형

- 사업량 : 2,000ha, 사업비 : 10,328백만원(국고보조 100%)

### □ 지원조건

- 매도이양 : 만 70세까지 ha당 241천원을 매월 분할 지급(2,896천원/ha/년)
- 임대이양 : ha당 2,977천원을 1회에 일시 지급
- 지급한도 :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 (2ha까지 지급)
  - \* 동일인이 매도이양 및 임대이양 신청시는 각각 적용

### □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 □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농산경영과 (☎02-500-1777, 1771)
- 한국농촌공사 농지은행사업처 (☎ 031-420-3372, 3375)

### □ 신청기관 : 한국농촌공사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 □ 사업목적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조기정착을 도모하고, 고품질안전농산물 생산 장려 및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 제고

### □ 지원대상

-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 및 농지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농업법인
  -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버섯재배 농가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되, 버섯재배의 경우 원목재배형태는 지급대상에 포함
  - 임야에서 자연상태로 재배되는 임산물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되, 논이나 밭의 형태로 재배되는 농림산물은 지급대상에 포함

### □ 사업내용

- 사업량 43,338ha, 사업비 17,546백만원,(국고 보조)

### □ 지원조건

- 지급기간 : 필지별로 3년간(3회) 한시적 지급
- 지급대상 : 농가당 0.1ha 이상 ~ 5.0ha이하

###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등

### □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친환경농업정책과(☎02-500-1812)
- 시·도 농산 또는 친환경농업 담당과, 시·군 등의 농업담당부서
  -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자 통보(인증기관) 및 보고(농림부)

- 보조금 지급대상 확정 및 보조금 지급
-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을 통한 전산입력관리
-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 친환경농산물인증 여부 및 인증단계별 인증기준 이행여부 등 확인 후 지자체 통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031-463-1566), 지원, 출장소
  - 민간인증기관(31개) : (사)흙살림, (사)한농복구회, (사)양평환경농업21추진위원회, (사)국산콩가공업협회, (사)한국유기농업협회, (주)코악스, (주)부강테크, (사)정농회, 글로벌유농인, 환경대학교산학협력단,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 (사)울진환경농업연구회, (주)오씨케이, 천안연암대학교산학협력단, 영농조합법인학사농장, (주)스페이스, 상지대학교산학협력단, (사)친환경농업문화연구소, 경북대학교산학협력단,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진주산업대학교산학협력단, 경상대학교산학협력단, 농협중앙회, 건국대학교산학협력단, 단국대학교산학협력단,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주)푸른환경농업연구소, 순천대학교산학협력단, 강원대학교산학협력단, 광주여자대 친환경인증사업단 영농법인, 남도친환경 영농조합법인

#### □ 신청기관

- 신청기간 : 2007.3.1~3.31
- 신청기관 : 읍·면·동사무소
- 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인증서 사본

##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 사업

### □ 사업목적

-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전국 평균쌀값과의 차이의 85%를 직접지불로 보전함으로써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

### □ 지원대상

-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논농업에 이용하는 총 농지면적이 1천㎡(0.1ha) 미만인 자
    - 「농지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처분명령(지급대상 농지에 한함)을 받고 농지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자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98년 1월 1일부터 '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연근·미나리·왕골 재배)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지)

### □ 사업내용

-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
  - 고정직접지불금은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 영농회사법인 포함, 이하같음)에게 지급
    - \*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을 차등하여 지급
  - 변동직접지불금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한 농업인에게 목표가격과 수확기 전국 산지 평균쌀값과의 차이의 85%에서 쌀80kg 가마당 고정직접지불금단가를 차감한 금액에 1ha당 쌀 61가마를 기준하여 지급
-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신청 신고센터”를 설치, 연중 운영으로 실경작자 농업인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감시기능 강화

□ 자금유형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 합계	용자			지방비	자부담
		국고	보조	용자		
■ 고정직접지불금	1,024천ha	100%	100%	-	-	-
■ 변동직접지불금	998천ha	100%	100%	-	-	-

□ 지원조건

- 고정직접지불금은 대상농지에서 '01년 이후 벼·연근·미나리·왕골이 외의 다른 작물로 전환 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되,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은 충족되어야 함
- 변동직접지불금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대상 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하되,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이 충족 되어야 함

□ 사업주관기관

- 시·군·자치구의 구청(산업과, 지역경제과 등)
  - 대상자 등록, 등록대장 비치, 지급요건 이행점검,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

□ 사업 담당부서

- 농림부(소득정책과, ☎02-500-2103~2104)
- 시·도(농정과 농산과 등)
  - 시·군·구사업 지도·감독, 사업내용의 홍보 및 교육
- 읍·면·동사무소
  -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등록(변경)·이의신청 접수
  -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전산입력 및 등록대장 비치
- 한국농촌공사(시·군지사)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의무 이행상황 점검
  - 지급대상농지에서의 벼재배 여부 확인
- 시·군 농업기술센터 : 토양검사(엽분석 포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군 출장소) : 잔류농약 검사
- 농협중앙회 : 기금의 관리·운용사무 수탁 관리

□ 신청기관 : 읍·면·동사무소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 사업목적 :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소득 보조 및 지역 활성화 도모

### □ 지원대상 법정리

- ① 전국의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경지율 22% 이하이면서 경사도 14%이상 농지면적이 50% 이상된 법정리내의 밭 및 초지
- ② 도서는 “도서개발촉진법”상의 도서내의 밭 및 초지
- ③ 제주도 본도는 「농업적 토지이용 적성등급」 4등급 및 5등급이 50% 이상된 법정리 내의 밭 및 초지

### □ 지원대상 농지

-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실제 토지이용 현상이 '03년부터 '05년까지 3년동안 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초지법에 의해 조성된 초지

### □ 사업내용

- 조건불리지역 구분지표를 적용하여 선정한 법정리내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농지관리의무, 마을공동기금 조성 및 마을 활성화 실천 등 지급요건을 이행할 경우 보조금 지급
  - 지원요건 : 실경작자가 지급 대상지 해당 읍·면에 거주
  - 지원단가 : 밭 400천원/ha, 초지 200
- 마을(행정리)별로 마을대표를 선정하고 마을공동기금을 조성하여 마을활성화 실천,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에 활용

□ 자금유형 : 사업량 187천ha, 사업비 523억원, 국고 70%·지방비 30%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 신청기관 : 읍·면사무소

## 농촌경관직접지불사업

사업목적

- 경관작물의 재배 등 농촌의 경관을 보전함으로써 농촌다움을 유지하고 도시민의 여가수요 증대에 대응하여 농촌지역사회의 활성화를 도모

지원대상 : 협약에 따라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사업내용

- 농촌경관을 유지·보전하기 위해 지자체와 마을간 협약을 체결하고 농지에 일반작물대신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 및 소득손실을 직접지불금으로 지급

자금유형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사업비 합계	예산액			융자		
		계	보조	융자			
800ha	1,408	1,000	1,000	-	408	-	

지원조건

- 지원단가 : 170만원/ha
- 지원조건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지급조건 : 마을별로 경관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와 경관보전협약 체결하고, 협약내용 준수 의무 이행
  - ※ 경관작물 : 농촌경관유지 및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작물(예 : 유채, 메밀, 코스모스, 해바라기, 목화, 야생화 등)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촌정책국 농촌진흥과(☎02-500-1971, 1965)
- 시·도 : 농정과, 농산과
- 시·군 : 농정과 등

신청기관 : 시·군·구

## 농업인 재해공제사업

사업목적

- 농업인의 농업관련 활동 및 각종 사고로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여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종합적으로 보호, 육성
-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기계의 각종사고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의 재산적 피해에 대한 신속한 재생산 여건 조성

지원대상

- 농협중앙회의 농업인안전공제 및 농기계종합공제를 가입한 농업인

사업내용

- 농협중앙회의 농업인안전공제 및 농기계종합공제를 가입한 농업인에게 공제료 50% 지원

자금유형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사업비 합계	예산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818천건	45,326	22,663	22,663	-	-	22,663

지원조건

- 국고 50%, 자부담 50%

사업주관기관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임업인은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농촌사회과(☎02-500-2081-2)

농협 농업인특종공제팀(☎02-2127-7673)

신청기관 : 지역농협



##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경감지원사업

사업목적

- 농어촌지역의 노인인구 급증, 의료서비스 이용상의 어려움, 경제적 능력의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국고에서 일정부분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

지원대상

- 농어촌(준농어촌 포함)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세대
  - ※ 농어촌 : 읍·면, 시(市)의 동(洞)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 준농어촌 : 특·광역시내 농업진흥지역,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구

사업내용

- 건강보험공단에서 농어업인에게 부과하는 건강보험료 50% 경감지원

자금유형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사업비 합계	예산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용자		
532천세대	127,176	127,176	127,176	-	-	-

지원조건

- 국고 100%

사업주관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농촌사회과(☎02-500-2081-2)

시·도, 시·군·구, 읍·면·동 농정업무담당부서

신청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읍·면·동사무소 확인)

## 농어업인의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사업목적

-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 및 농어업인의 노후소득 보장

지원대상

- 지역가입자(당연·특례) 중 농어업인과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 가입자로 된 농어업인

사업내용

- 연금을 가입한 농어업인에게 보험료 일부 지원

자금유형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사업비 합계	예산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275천명	76,054	76,054	76,054	-	-	-

지원조건

- 국고 100%

사업주관기관 : 국민연금관리공단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농촌사회과(☎02-500-2081-2)

시·군·구, 읍·면

신청기관 : 국민연금관리공단(시·군·구, 읍·면 확인)

## 취약농가 인력지원(영농·가사도우미)

### □ 사업목적

- 도시와 농촌의 유희인력으로 농가인력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사고발생농가에는 영농도우미를, 고령취약농가에는 가사도우미를 지원

### □ 사업내용

#### <사고농가 영농인력 지원(영농도우미)>

- 지원대상 및 지원액
  - 지원대상 : 농지소유규모 50,000㎡미만 농가의 73세 이하 농업인이 사고가 발생하여 영농도우미를 요청하는 경우, 10일 이내 지원(1일 35,000원)
- 신청방법 및 이용기간
  - 사고로 농사일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 거주지 관할 지역농협(또는 지역농협문화복지센터)에 신청하며, 영농도우미는 신청 후 치료기간 중 이용
- 지원조건 : 국고70%, 자부담30%

#### <고령취약농가 가사지원(가사도우미)>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 65세 이상 농어촌 고령가구(단독 및 부부가구 포함), 65세미만 농가 중 사고발생으로 1개월이상 정상적인 가사활동이 어려운 농가 등 농촌지역 취약가구
  - 지원내용 : 지역농협에서 지역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농촌 고령 취약가구에 세탁, 청소 등 기초 가사활동 지원
- 지원조건 : 국고70%, 농협30%

### □ 2007년도 예산

구분		영농도우미	가사도우미	계
사업비 (백만원)	계	4,000	1,514	5,514
	국고보조	2,800	1,060	3,860
	지방비	-	-	-
	자부담	1,200	-	1,200
	농협	-	454	454

### □ 사업주관기관 : 농협중앙회(지역농협)

### □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여성정책과(02-500-1607, 1609)
- 농협중앙회(지역농협) : 농촌지원부서(여성·복지)

### □ 신청기관 : 지역농협

##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

### □ 사업목적

-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농림어업전시관, 학습관,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휴양시설 등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도시민 등에게 체험·휴양공간으로 제공함으로써 농어촌지역 소득증대에 기여

### □ 지원대상(사업대상자) : 제한없음

### □ 사업내용

#### ○ 사업규모 및 시설기준

- 사업규모(부지면적 30,000~100,000제곱미터 미만)
- 시설기준

- 기본시설(사업자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 농림어업인 전시관(60제곱미터 미만), 학습관(60제곱미터 미만)
- 자율시설 : 「농어촌정비법」 제66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음식물 제공시설, 기타 휴양단지 운영에 필요한 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설치 가능한 시설 범위내에서 사업시행자가 사업대상지역의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설치

#### ○ 개발방법 및 유형

- 지역개발계호기 및 지역문화 등과 연계·조화되게 개발
- 농촌지역의 자연경관을 보전·활용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다양하게 개발(자연학습형, 청소년심신수련형, 주말휴양형 등)

### □ 자금유형

- 사업비 지원 대상사업이 아님

###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 □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촌정책국 농촌진흥과(☎02-500-1968)
- 시·도 : 농촌정책국(농수산국) 농업정책과
- 시·군 : 농업정책과

### □ 신청기관 : 해당 시·군

## 관광농원사업

### □ 사업목적

-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생산기반을 활용한 영농체험 및 휴식 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도시민 등에게 이용하도록 하여, 도시민에게는 농촌·농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림어업인 등에게는 소득증대의 기회를 부여

### □ 지원대상

- 농림어업인, 한국농촌공사,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에 한하여 관광농원 개발을 허용

### □ 사업내용

- 사업규모 및 시설기준
  - 사업규모(부지면적 66,000제곱미터 미만)
  - 시설기준
    - 영농체험시설(기본시설로 사업자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 식량작물·특용작물·약용작물·채소·과수·화훼·유실수·버섯 등이 입식된 농장, 농업용조수지·조류사육장·초지·축사·양어장·유리하우스(비닐하우스 포함)·분재원 등 농수산물생산을 위한 토지 및 시설(자연림·자연초지 또는 야생화 등의 자생지 제외)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전체 농원면적의 100분의 20이상
    - 자유키오 시설 : 농어촌정비법 제66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음식물 제공 시설, 기타 관광농원 운영에 필요한 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설치 가능한 시설범위내에서 사업시행자가 사업대상지역의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설치

관광농원에 설치되는 시설은 관광농원사업 취지에 부합하도록 농촌·농업 체험시설 위주로 계획·설치하도록 하여 편의시설(숙박시설, 음식점) 위주의 운영이 되지 않도록 한여야 함

□ 자금유형

- 이차보전 대상사업으로 농업종합자금 지원

□ 지원조건

- 예산의 지원
  - 농업종합자금으로 관광농원 운영을 위한 운영자금, 관광농원 시설 설치 및 개보수를 위한 자금 지원
- 자금의 운용관리
  - 용자금은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목적외 사용은 일체 불허
  - 기타 용자에 관한 사항은 농업중앙회 여신관리규정 준용
- 사업비 지원 신청시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업종합자금 취급사무소에 신청
  - 사업계획서 작성방법과 서식 등은 농업종합자금 취급사무소에서 안내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촌정책국 농촌진흥과(☎02-500-1968)
- 시·도 : 농촌정책국(농수산국) 농업정책과
- 시·군 : 농업정책과

□ 신청기관 : 해당 시·군

## 농어촌민박사업

### □ 사업목적

- 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일부를 농어촌을 방문한 이용객에게 제공함으로써 이용객에게는 농촌·농업의 정취를 느끼게 하고 농어촌지역 주민에게는 소득증대의 기회를 제공

### □ 지원대상(사업대상자)

- 농어촌지역 주민

### □ 사업내용

- 사업규모 및 시설기준
  - 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는 연면적 15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에 한하여 가능(다만, '05.11.5이전부터 농어촌민박을 운영중이던 자중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를 발급받은 사업자는 객실 7실까지 운영가능)

### □ 자금유형

- 이차보전 대상사업으로 농업종합자금 지원

### □ 지원조건

- 예산의 지원
  - 농업종합자금으로 농어촌민박 시설 개보수를 위한 자금 지원
- 자금의 운용관리
  - 융자금은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목적외 사용은 일체 불허
  - 기타 융자에 관한 사항은 농업중앙회 여신관리규정 준용
- 사업비 지원 신청시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업종합자금 취급사무소에 신청
  - 사업계획서 작성방법과 서식 등은 농업종합자금 취급사무소에서 안내

###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 □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촌정책국 농촌진흥과(☎02-500-1968)
- 시·도 : 농촌정책국(농수산국) 농업정책과
- 시·군 : 농업정책과

### □ 신청기관 : 해당 시·군

## 한계농지정비사업

### □ 사업목적

-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주택·체육·관광·복지·문화시설 설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한정된 국토자원의 이용도를 높이고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

### 한계농지의 정의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에서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

1.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이거나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지. 다만, 경지정리사업 또는 농업용수 개발사업이 시행된 지역과 「농어촌정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조사결과 농림부장관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지역의 농지는 제외
2. 「광업법」에 의한 광업권이 기간만료 또는 취소로 소멸된 광구의 인근지역의 농지로서 토양오염등으로 인하여 농업목적으로 사용하기에 부적당한 농지

### □ 지원대상

- 시장·군수 또는 한계농지를 개발하려는 사업자

### □ 사업내용

- 과수·원예·특용작물·축산단지·양어장 등 농림수산업을 위한 농지의 조성 및 시설설치
-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숙박시설 등 농어촌관광휴양자원 개발·이용을 위한 시설설치
- 주택·택지 및 부속농지, 공업시설, 전시장·박물관 등 문화예술 관련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의료시설, 교육연수시설,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 기타 농어촌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 부령이 정하는 시설

### □ 자금유형 및 지원조건

- 동 사업은 민간자율사업으로 사업비 지원 등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음

###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 □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촌정책국 농촌진흥과(☎02-500-1968)
- 시·도 : 농업정책국(농수산국) 기반조성과, 농산지원과, 농축산과
- 시·군 : 건설과, 농정과

### □ 신청기관 : 해당 시·군



## 농·축산경영자금지원

### 사업목적

- 정부가 농업인에게 농업경영비의 일부를 저리로 지원함으로써 농·축산농가의 농업경영을 원활하게하고 농가소득 증대 도모

### 지원대상

- 일반농업경영자금(벼농사 위주 농가), 전문농업경영자금(맥류, 과수, 원예, 특작농가), 일반축산경영자금(부업규모 축산농가 및 농업종합자금을 지원받지 않은 준·전업 축산농가), 재해대책경영자금(농림부장관이 재해대책의 일환으로 상환연기 또는 특별 지원키로 한 재해농가)

### 사업내용

-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 소요비용의 일부를 저리로 지원함으로써 농축산경영을 원활하게하고, 농가소득의 증대를 도모

### 자금유형

- 사업규모(용자) : 32,000억원

### 지원조건

- 금리3%, 1년 이내 상환

###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협동조합과 (☎02-500-1698)

### 사업담당부서

- 농협중앙회 (☎02-2080-6782)

### 신청기관 : 농협 시·군지부, 지역농·축협 및 품목조합

##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

### □ 사업목적

- 재해 등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에게 경영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경영안정에 필요한 회생자금 지원

### □ 지원대상

- 준전업농 또는 농업용 부채가 2,500만원이상인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 단, 특별재난지역은 50% 수준으로 지원
- \* 농업협동조합 임·직원은 제외

### □ 사업내용

-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회생가능할 경우 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하고, 회생불능인 경우는 인수희망자에게 인수자금을 지원하여 기존 농업시설을 활용 유도
- 지원대상자금은 상환기일이 도래되었거나 2년이내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농업용 대출금,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2년전부터 신청일 현재 까지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농협의 경제사업 연체채무, 2001년 1월 8일 이후 다른 대출금으로 대위변제했거나 앞으로 대위변제할 농업용 자금, 농경지·농업용 시설 또는 농작물·가축 등의 피해복구자금, 시설개보수자금 및 1회용 운전자금
- 이차보전 기준금리는 농협중앙회 기준금리 적용

### □ 자금유형

- 융자(경영회생자금 융자 90%, 자부담 10%를 부담하는 농업인은 우선지원, 인수자금은 자부담 30%이상)

### □ 지원조건

- '07년 지원규모(1,100억원), 연리 3%,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협동조합과(☎02-500-1699)

### □ 사업담당부서

- 농협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

### □ 신청기관

-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시·군지부, 조합 및 산림조합

##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

### □ 사업목적

- 폐비닐 수거비 지원으로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의 수거 활성화를 통한 농경지 오염방지 및 농촌지역 환경 개선

### □ 지원대상

- 마을이장, 작목반장, 마을 부녀회장 등 농업인과 개인 수거자

### □ 사업내용

-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의 수거 활성화를 위해 수거비 지원  
- 사업량 100천톤, 사업비 3,000백만원

### □ 지원조건

- 30원/kg 정액지원(국고보조 100%)

###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 사업담당부서(협조부서)

- 농림부 : 식량정책국 친환경농업정책과(☎02-500-1805~6)
- 시·도 : 농정국 친환경농업과, 농산·유통과, 농정과(보건환경국 환경과)
- 시·군·구 : 친환경농업과, 산업과, 농정과(환경·자원과, 청소과)
- 한국환경자원공사 : 본사, 지사 및 사업소

### □ 신청기관

- 한국환경자원공사(사업소) : 물량확인 요청
- 시·군·구(읍·면·동) : 폐비닐 수거비 요청
- 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서, 수집전표, 계량증명서 및 통장사본

## 산림경영계획사업

사업목적

- 산림자원의 조성·관리에 대한 종합계획인 산림경영계획의 작성을 지원함으로써 산림자원 관리의 합리성 제고 및 임업경쟁력 강화

지원대상

- 2007년도에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인가 받은 산주

사업내용

- 산림에 대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산림경영계획 수립

자금유형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사업비 합계	예 산 액 (일반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산림경영계획작성	150천ha	1,528	764	764	-	764	-

지원조건

-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 받은 산주
- 지원단가 및 보조비율 : 10,189원/ha당, 국고50%, 지방비 50%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

사업담당부서

- 산 릫 청 : 산림이용본부 경영지원팀 (☎042-481-4195~6)
- 시·도, 시·군·구 : 산림관련부서

신청기관 : 시·군·구

## 사방사업

사업목적

- 황폐지(산지·해안·계천) 및 황폐화가 우려되는 산지를 복구하여 국토를 보전하고 재난예방·수원함양·공공이익의 증진 및 산업발전에 기여

지원대상

- 산지사방, 예방사방, 야계사방, 사방댐, 사방댐준설, 해안방재림 조성, 산림유역관리사업이 시급한 지역
- ※ 개인 또는 공공단체에서도 자기소유 토지 안에서 자기부담으로 사방사업을 실행할 수 있음.

사업내용 및 자금 유형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사업비 합 계	예산액(일반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117,118	81,983	81,983		35,135	-
산 지 사 방	60ha	3,248	2,268	2,268		972	-
예 방 사 방	30ha	2,430	1,701	1,701		729	-
야 계 사 방	33km	6,303	4,412	4,412		1,891	-
사 방 댐	276개소	68,133	47,693	47,693		20,440	-
사방댐준설	176개소	1,231	862	862		369	-
해안방재림	10ha	1,000	700	700		300	-
산림유역관리	19개소	30,550	21,385	21,385		9,165	-
사방기념공원	1개소	2,572	1,800	1,800		772	-
감 리 비	1식	1,659	1,162	1,162		497	-

※ 사방기념공원은 경북 1개소가 해당되며, 감리비는 사방댐 및 산림유역관리사업 신청시 해당됨.

지원조건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사업주관기관 : 시·도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산림보호본부 치산팀(☎042-481-4271~3)
- 시·도(시·군·구) 산림관련부서 및 산림환경연구소(원)

신청기관 : 시·도

## 산불진화 진입도로 개설사업

사업목적

- 산불취약지 등 주요산림에 산불진화차량의 진입이 가능한 도로를 설치하여 산불방지 등 산림경영에 활용하고 농산촌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

지원대상

- 주 기능이 산불진화를 위한 진입로이나 산불진화는 물론 산림경영 등 다원적 기능이 제고될 수 있는 산림

사업내용

- 산림내 산불진화 진입로를 설치하여 산불예방 및 진화자원의 투입, 산불확산 저지선 기능을 확대하고, 산림경영기반 구축에 기여

자금유형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km)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 산 액 (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1,250	1,000	1,000	-	125	125
○ 신 설	10	1,250	1,000	1,000	-	125	125

지원조건 : 국고보조 80%, 지방비 10%, 자부담 10%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산림보호본부 산불방지팀(☎042-481-4255)
- 시·도, 시·군 : 산림부서

신청기관 : 시·군·구

## 단기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

사업목적

- 단기소득임산물(밤 · 표고 · 송이 등) 생산 · 시설의 현대화 · 규모화를 통한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

지원대상

- 밤 · 표고 등 단기임산물 생산자 및 법인경영체

사업내용

- 밤, 표고, 기타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지원사업

자금유형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용자		
계		49,329	18,229	18,229	(2,846)	10,304	20,796
○ 표고 생산기반 지원		8,432	3,033	3,033	(1,633)	1,833	3,566
○ 밤 생산기반 지원		7,200	2,030	2,030	(893)	1,607	3,563
○ 대추·호도·뽕은감 생산기반 지원	40개소	1,280	320	320	(320)	320	640
○ 산양삼 생산이력제 지원	2개소	200	100	100	-	100	-
○ 독립가·임업후계자 작업로 지원	176km	704	141	141	-	141	422
○ 임산물생산단지기반시설 지원	6개소	31,513	12,605	12,605	-	6,303	12,605

지원조건

- 국고보조 20%~100%, 지방비 20%, 용자 20%, 자부담 20%~60%
- ※ 용자조건 : 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

사업주관기관 : 시 · 군 · 구, 산림조합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산림이용본부 산촌소득팀(☎042-481-4126~8)
- 시 · 도, 시 · 군 · 구, 산림조합 : 산림관련부서

신청기관 : 시 · 군 · 구(읍 · 면 · 동)

- ※ 순수 용자사업 신청서 제출기관 : 사업지 관할 산림조합

## 조경수 · 분재생산사업

사업목적

- 조경수 · 분재산업 육성으로 농가소득증대 및 수출 확대

지원대상

- 조경수 · 분재 생산자 및 법인경영체

사업내용

- 관상수 토양개량, 생산장비, 관정시설 지원사업

자금유형

내용별	사업량 (ha)	사 업 비(백만원)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130	1,829	982	982	-	250	597
○ 관상수토양개량	100	475	380	380	-	95	-
○ 관상수생산장비	16	730	274	274	-	91	365
○ 조경수관정시설	14	624	328	328	-	64	232

지원조건

- 국고보조 30%~80%, 지방비 20%, 자부담 30%~50%

사업주관기관 : 시 · 군 · 구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이용본부 산촌소득팀(☎042-481-4126~8)
- 시 · 도, 시 · 군 · 구 : 산림관련부서

신청기관 : 시 · 군 · 구(읍 · 면 · 동)



## 산림복합경영 사업

사업목적

- 산림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목재생산과 단기소득사업을 조화롭게 복합적으로 경영함으로써 산주의 소득증대 도모

지원대상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인

사업내용

- 목재생산과 병행하여 단기임산물의 복합경영 지원사업

자금유형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복합경영	30개소	2,289	654	654	(981)	654	981

지원조건

- 국고보조 20% 지방비 20%, 융자 30%, 자부담 30%
- ※ 융자조건 : 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 산림조합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이용본부 산촌소득팀(☎042-481-4126~8)
- 시·도, 시·군, 산림조합 : 산림관련부서

신청기관 : 시·군·구(읍·면·동)

- ※ 순수 융자사업 신청서 제출기관 : 사업지 관할 산림조합

##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

사업목적

- 백두대간을 한반도의 산림생태축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한 기반 마련
-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될 수 있으므로 경제·사회·문화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정부지원 추진

지원대상

-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32개 시·군의 보호지역(보호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주민공동체·주민 또는 보호지역안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사업내용

- 단기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기타 지역의 농림업소득과 관련된 사업(관수시설, 임산물 가공 등)

자금유형

도별	개소	사 업 비(백만원)					
		합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32	10,697	7,488	7,488		3,209	
강 원	12	3,877	2,714	2,714		1,163	
충 북	6	2,073	1,451	1,451		622	
전 북	3	1,003	702	702		301	
전 남	1	334	234	234		100	
경 북	6	2,073	1,451	1,451		622	
경 남	4	1,337	936	936		401	

지원조건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사업주관기관 : 시·군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산지보전단 백두대간보전팀(☎042-481-4292)
- 시·도, 시·군 : 산림관련부서

신청기관 : 시·군(읍·면·동)

##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사업목적

- 임산물 유통단계 축소, 유통비용 절감으로 생산자 소득 제고 및 수급 안정 도모
- 임산물 수출촉진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수출확대로 임업인 소득 증대 도모

지원대상

- 단기임산물 생산자 및 법인경영체, 임산물수출업자 등

사업내용

- 임산물 유통센터조성, 가공·유통시설, 임산물수출촉진 등 22종

자금유형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21,650	9,405	9,405	(287)	2,907	9,051
○ 관상수생산단지유통센터	1개소	1,000	500	500	-	200	300
○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3개소	5,256	2,628	2,628	-	1,051	1,577
○ 산채류 가공·유통센터	1개소	1,000	500	500	-	200	300
○ 뽕은 감 가공·유통시설	3개소	1,500	300	300	-	300	900
○ 임산물 가공지원	247개소	1,235	247	247	(247)	247	494
○ 유통정보시스템	1식	352	352	352	-	-	-
○ 임업인 홈페이지 구축	90명	135	135	135	-	-	-
○ 임산물표준출하지원	197개소	4,545	909	909	(40)	909	2,687
○ 임산물 포장개선(민간)	1식	200	140	140	-	-	60
○ 임산물 수출 활성화		5,893	3,194	3,194	-	-	2,699
○ 해외시장개척		534	500	500	-	-	34

지원조건

- 국고보조 20%~100%, 지방비 20%, 용자 20%, 자부담 30%~60%
- ※ 용자조건 : 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 산림조합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산촌소득팀(☎042-481-4126~8), 국제협력팀(☎042-481-4085~7)
- 시·도, 시·군, 산림조합 : 산림관련부서

신청기관 : 시·군·구(읍·면·동)

- ※ 순수 용자사업 신청서 제출기관 : 사업지 관할 산림조합

## 임산물 생산자조직 육성사업

사업목적

- 생산자 조직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조직의 활성화 및 규모화를 촉진하고 임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생산자의 소득증대 및 경쟁력 강화

지원대상

- 임산물 생산자조직(법인경영체)

사업내용

- 밤, 표고, 대추, 산나물 등 단기소득임산물 수매·출하조절자금 운용 등

자금유형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사업비 계	예산액(농안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 임산물생산자단체육성사업	-	65,588	52,470	-	52,470	-	13,118

지원조건

- 국고용자 80% 자부담 20%

※ 용자조건 : 연리 3%, 용자기간 1년 , 용자한도액 : 2,000백만원 이내

사업주관기관 : 산림조합중앙회, 농협중앙회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산림이용본부 산촌소득팀(☎042-481-4126~8)
- 산림조합중앙회(☎02-3434-7221~3) 및 농협중앙회(☎02-397-6555)

신청기관 : 시·군 산림조합, 농업협동조합

##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사업

사업목적

- 밤, 표고, 송이, 대추 등 단기소득임산물 저장상품 품질향상 및 출하 조절로 가격안정과 생산자 소득증대 도모

지원대상

- 임산물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생산자단체 포함)

사업내용

- 밤, 표고, 대추, 산나물 등 단기소득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지원사업

자금유형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72개소	15,976	3,994	3,994	(3,994)	3,994	7,988
○ 저장시설	62	14,996	3,749	3,749	(3,749)	3,749	7,498
○ 건조시설	10	980	245	245	(245)	245	490

지원조건

- 국고보조 20%, 지방비 20%, 용자 20%, 자부담 40%

※ 용자조건 : 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 산림조합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산림이용본부 산촌소득팀(☎042-481-4126~8)

- 시·도, 시·군·구, 산림조합 : 산림관련부서

신청기관 : 시·군·구(읍·면·동)

##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사업

사업목적

- 임업분야의 세부사업 용자금을 산림사업종합자금으로 통합하여 임업 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종합지원

지원대상

- 임업인, 작목반, 법인경영체, 목재수출업체, 산림조합 또는 임산물 생산단체 등

※ 지원제외 대상(농림사업시행지침서 참조)

사업내용

- 자원조성관리, 전문임업인육성, 산림소득 및 산업육성, 해외산림투자 지원, 산림조합육성

자금유형

(단위 : 백만원)

구분	2006 사업비			2007 사업비		
	계	국고용자	대출기관용자	계	국고용자	대출기관용자
계	36,660	36,660	-	59,960	27,960	32,000

※ 대출기관 용자 32,000백만원은 산림조합육성자금을 제외한 10년이하 단기성자금 지원액(이차보전액 1,600백만원)

지원조건

- 금리는 사업별 임업인(생산자단체 포함) 3%, 비임업인 4% 지원을 원칙으로 함(단 조림, 숲가꾸기, 임도, 임야매입(보전산지), 해외산림 투자, 재해복구지원비는 1.5%)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 산림조합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산림이용본부 경영지원팀(☎042-481-4194)
- 시·도, 시·군, 산림조합 : 산림관련부서
- 산림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02-3434-7221~3)

신청기관 : 시·군·구, 산림조합

## 산림바이오매스 사업

사업목적

- 고유가 시대를 맞아 농·산촌 주민들의 난방비를 절감시키고, 방치된 숲가꾸기 산물을 활용함으로써 산불·산사태 등 각종 재해예방 및 자원활용 촉진 도모

지원대상

- 농·산촌 및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산촌개발지역에 거주하는 농가

사업내용

- 산지에 방치된 산물을 수집하여 연료로 사용하는 화목겸용 보일러 보급에 소요되는 경비(1대당 1,500천원 지원)

자금유형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 화목겸용보일러 보급	740대	1,110	555	555	-	222	333

지원조건

- 국고보조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사업주관기관 : 시·도, 시·군·구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산림이용본부 목재이용팀(☎042-481-4201~2)
- 시·도, 시·군·구 : 산림관련부서

신청기관 : 시·군·구

## 산림경영 기술지도 사업

사업목적

- 선진 산림경영 및 산림관련 기술의 개발·보급과 현장 위주의 실질적인 산림경영기술지도 실시로 사유림의 자원화와 사유림경영 활성화 도모

지원대상

- 산림조합, 독립가, 임업후계자 등

사업내용

- 산림경영지도원에 대한 인건비 및 우수 지도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 기타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 지원

자금유형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용자		
계		14,994	12,060	12,060	-	-	2,934
산림경영지도원인건비	840명	10,748	8,517	8,517	-	-	2,231
지도실적 인센티브		1,094	1,094	1,094	-	-	-
산 릫 지	342천부	466	233	233	-	-	233
특화품목전문지도원육성	40명	2,201	1,801	1,801	-	-	400
지도원 특화품목 교육	50명	50	50	0	-	-	0
산주와의 만남행사		125	100	100	-	-	25
독립가·임업후계자행사지원		40	40	40	-	-	0
산림경영지발간지원		20	20	20	-	-	0
산림경영모델학교운영지원		150	105	105	-	-	45
정보화시스템구축	1건	100	100	100	-	-	0

지원조건

- 국고보조 80% , 자부담 20% 등
- ※ 각 사업별 보조비율은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참고

사업주관기관 :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산림이용본부 경영지원팀(☎042-481-4191~2)
- 산림조합중앙회 회원지원부(☎02-3434-7209~10), 시·군 산림조합

신청기관 : 산림조합중앙회, 시·군 산림조합



## 사유림 협업경영 사업

사업목적

- 영세사유림을 대상으로 협업체의 조직·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경영 규모 확대를 통한 임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산림소득을 증대시켜 사유림경영의 활성화 도모

지원대상

- 협업체 회원의 참여도가 좋고 모범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협업체로서 평가계획서에 의해 점검 및 평가실시 후 우수협업체로 선정된 협업체

사업내용

- 협업경영을 통하여 임지를 규모화 함으로써 소규모 임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산림관리를 유도
- 협업체 내실화 추진계획에 따라 협업체를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고 우수협업체를 선발, 집중 육성하여 협업체 우수모델 정립

자금유형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사업비 합계	예산액 (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200	200	200			
○ 협업체운영비	20개소	100	100	100			
○ 기자재·장비	20개소	100	100	100			

지원조건 : 국고보조 100%

사업주관기관 :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산림이용본부 경영지원팀(☎042-481-4194)
- 산림조합중앙회 도지회, 산림조합

신청기관 : 산림조합

## 해외조림투자 지원사업

사업목적

- 해외조림투자의 장기성과 불확실성 등을 감안하여 해외산림개발(조림) 조사비를 지원함으로써 신규 해외조림 확대를 도모하고 해외조림 투자정보 축적

지원대상

- 신규 해외조림 투자를 위해 사전 조사를 하려는 자(법인)

사업내용

- 해외조림 사전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여비, 현지인부임, 장비임대료, 외부용역료 등)을 보조 지원

자금유형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농특회계)			
			계	보조	융자	자부담
해외산림개발 (조림)조사비	6개소	180	144	144	-	36

지원조건

- 사업비의 80%이내 보조지원 (1개소 조사비 3천만원 기준)

사업주관기관 : 산림청 국제협력팀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자원정책본부 국제협력팀(☎042-481-4088~9)

신청기관 : 산림청 국제협력팀

## 조림 · 숲가꾸기 · 묘목생산사업

사업목적

- 경제적으로 가치 있고 생태적으로 건전한 산림을 조성
- 목재의 안정적인 자급기반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지원대상

- 당해연도 조림,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는 산주 또는 산림경영자  
정부계획 조림용 시설양묘 및 묘목기반조성(관정, 토양개량) 양묘사업자

사업내용

- 조림 : 경제수조림, 리기다소나무갱신조림, 금강소나무 후계림 조성, 산림경영모델숲조성, 산불 피해복구조림 등
- 숲가꾸기 :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보육, 천연림 개량, 등
- 묘목생산 : 양묘토양개량장비지원 등

자금유형

내용별	사업량 (ha)	사 업 비(백만원)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218,292	376,282	210,395	210,395	-	141,835	24,052
○ 조림·묘목생산	18,106	109,202	64,590	64,590	-	41,411	3,201
○ 숲가꾸기	200,000	267,080	145,805	145,805	-	100,424	20,851

지원조건

- 조림 : 사업비의 90% 보조 (국비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숲가꾸기 : 사업비의 90% 보조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묘목생산 : 사업비의 50% 보조(국비 50%, 자부담 50%)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자원정책본부 산림자원팀(☎042-481-4183),  
숲가꾸기팀(☎042-481-4187)
- 시·도, 시·군·구 : 산림관련부서

신청기관 : 시·도, 시·군·구

## 식물자원 보전관리사업

사업목적

- 자생식물단지 조성사업을 통한 지역별 고유경관 회복과 사립수목원 지원으로 생물종 다양성을 유지하고 식물유전자원의 보전·증식으로 자원화 및 산업화 촉진

지원대상

- 자생식물단지조성 사업 : 지자체(시·도, 시·군·구)
- 사립수목원지원 : 민간(등록 사립수목원 운영자)

사업내용

- 자생식물단지조성사업 : 연중 우리꽃을 감상할 수 있는 시설비
- 사립수목원지원 : 증식·재배시설, 전시시설, 연구·교육시설 등

자금유형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합 계	예 산 액(일반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14개소	5,828	2,914	2,914		914	2,000
○ 자생식물단지조성	3개소	1,828	914	914		914	
○ 사립수목원지원	11개소	4,000	2,000	2,000			2,000

지원조건

- 국고보조 50%, 지방비(자부담) 50%

사업주관기관 : 시·도, 시·군·구, 사립수목원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산림보호본부 산림환경보호팀(☎042-481-4241~2)
- 시·도, 시·군·구 : 산림관련부서

신청기관 : 시·도, 산림청 산림환경보호팀

## 향토산업 육성사업

사업목적

- 농촌지역에 부존(賦存)되어 있는 향토자원을 개발하여 다양한 1차·2차·3차 산업으로 연계·발전시켜 지역경제의 활력 증진

지원대상

- 농업인, 생산자단체, 향토기업체, 연구단체 등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사업화가 가능한 향토자원관련 사업 포괄 지원
  - 기존 특산제품의 고급화 및 다양화 등
  - 전통농업자원, 토종 동·식물 등을 활용한 상품개발 등
  - 전통전래양식의 상품화 등
  - 농·수·축·임산물의 효능 및 약효를 이용한 신소재 상품개발 등
  - 향토자원을 활용한 문화상품의 개발 등
- 지원내용
  - ‘향토자원개발 기본계획’에 수립된 세부단위사업을 포괄 지원
    - H/W분야 : 제품개발을 위한 원재료·시설·장비 구입·설치 비용, 시제품 개발을 위한 시설 등 지원
    - S/W분야 : 제품개발 관련 컨설팅비용, 위탁 연구비용, 향토자원 권리화·디자인·브랜드 개발비용, 네트워크 구축·운영비용 등 지원
  - 단, 토지·부지·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 음식점·숙박시설 설치 또는 임차, 해당지역을 벗어난 판매장 설치 또는 임차 관련 비용은 지원제외

자금유형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사업비 합계	예산액			융자		
		계	보조	융자			
19개	13,296	4,308	4,308	-	3,754	5,234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기준보조율)
  - 신활력지역으로 지정된 70개 시·군의 경우는 기준 국고보조율을 10% 상향조정 가능(60:40)
  - 지방비 부담의 경우, 부담액 중 일부를 사업수혜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자율 시행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시행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농촌사회과(☎02-500-2085, 2087)
- 신청기관 : 시·군·구

##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사업목적

- 농촌지역에 고유한 지역특화품목을 집중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

지원대상

- 농업인 5명이상이 참여한 농업인조직, 생산자단체

사업내용

- 지정 또는 지원대상
  -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협정), UPOV협약 등과 관련된 개발가능 지역 특화품목
  - 상기 협약과 직접관련이 없더라도 지역적인 특색이 있거나, 기호식품, 건강식품으로 개발이 가능한 품목 등
- 지원내용 : 지역특화품목을 브랜드화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사업 (생산·유통·가공 등) 지원
  - 특히, 쌀 생산을 대체하는 특화작목은 우선 지원(연근, 순무 등)

자금유형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사업비 합계	예산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611개	312,053	102,843	102,843	-	94,532	114,678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기준보조율)

- 신활력지역으로 지정된 70개 시·군의 경우는 기준 국고보조율을 10% 상향조정 가능(60:40)
- 지방비 부담의 경우, 부담액 중 일부를 사업수혜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자율 시행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시행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농촌사회과(☎02-500-2085, 2087)

신청기관 : 시·군·구

##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 □ 사업목적

- 농산물의 운송, 보관, 포장과 관련된 물류표준화 기기의 구입지원을 통해 물류이동을 규모화하고, 복합운송실현 및 하역기계화를 촉진하여 유통비용절감

### □ 지원대상

- 지원대상 품목 : 원예농산물
- 지원대상 : 농협,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공영도매시장, 유통센터 등 공영도매시장(농산물공판장, 도매법인, 시장도매인, 하역 노조, 산지유통인), 국산농산물가공공장·저온저장업체 등
  - ※ 광폭차량, 윙바디 차량, 냉동·냉장차량은 파렛트 2열적재가 가능한 4.5톤이상 차량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 사업기간 및 방법

- 사업기간 : '97년 ~ 계속
- 지원방법 : 농산물 물류표준화설비를 구입하는 경우 구입자금 보조
- 지원장비 : 파렛트, 플라스틱상자, 전동차, 지게차, 광폭차량, 윙바디 차량, 냉동·냉장차량, 컨테이너, 결속기, 제함기 등

### □ 사업내용

- 사업비 : 11,545백만원
- 지원형태 : 민간보조(국고 50%, 자부담50%)
- 사업시행 주체 : 각 시·도(시·군)

###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 □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유통정책과 (02-500-1823~4)

- 시·도 :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유통특작과 등 시·도 직체에 따름
- 시·군 :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유통특작과 등 시·군 직체에 따름

### □ 신청기관 : 시·도, 시·군·구

##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건립

### □ 사업목적

- 주산지별로 품목 특성에 맞는 규모화·현대화된 산지유통종합시설(집하·선별·저장·포장·상품화시설 등)을 지원하여 농산물 생산·유통 계열화의 거점으로 육성
- 규격화된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유통하여 상품성 제고 및 부가가치 창출

### □ 지원대상

- 생산자단체 :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공동출자법인
- 농안법시행령 제2조제2호에 의한 청과류 및 화훼류를 취급(특용·약용작물 포함)하는 경우에 한하며, 임산물만을 취급하는 경우는 제외
- 시장·군수(자치구 포함)
- \* '08년부터는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생산자단체형으로 일원화)
- 지원제외 : 전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농수산물유통공사 시행) 하위 5% 이하 조직, 거점APC(재원 : FTA기금) 사업권역내 신규APC

### □ 사업내용

- 주산지에 집하·선별·포장·저장·상품화시설 등을 일괄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시설의 경우 보완 및 확장지원 가능
- 사업재원 : 국고보조 (생산자형 30%, 지자체형 50%)
- 용도 : 산지유통시설·장비 (건축물류, 선별·포장장비류, 유통시설장비류 등)
- 대상품목 : 과실, 채소 등 원예농산물 (예냉·냉장 수송 권장 및 선택품목)



자금유형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합계	예산액(균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국고계	보조	융자		
○ 산지유통센터설치	40	36,428	12,650	12,650	-	9,463	14,315
- 생산자조직	35	29,238	9,055	9,055		5,868	14,315
- 지방자치단체	5	7,190	3,595	3,595	-	3,595	-

지원조건

- 지원비율 : 생산자단체 (국고보조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지방자치단체(국고보조 50%, 지방비 50%)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유통정책과 (02-500-1829~30)

- 시·도 :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유통특작과, 친환경농업과 등 시·도 직제에 따름
- 시·군·구 : 산업과, 농축산과, 농정과 등 시·군 직제에 따름

신청기관 : 시·군·구

##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사업

### □ 목 적

- 농촌마을의 고유한 전통문화자원을 발굴, 도농간 교류촉진을 위한 자원으로 개발 활용함으로써 농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 활력화, 농촌 공동체문화 함양에 기여

### □ 지원대상

-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 추진의 합의가 된 마을로서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마을로 선정된 마을
-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마을

### □ 사업내용

- 농업자원을 포함한 마을 고유의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도농교류를 촉진하고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기반조성
- 마을 고유의 테마와 부존자원의 체계적 발굴
  - 볼거리, 먹을거리, 쉴거리, 체험거리, 놀거리, 살거리, 알거리 등
- 하드웨어 측면 : 체험·학습시설, 생활편의시설, 마을환경 정비, 경관 조성 등
- 소프트웨어 측면
  - 마을 고유의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매뉴얼 개발
  - 마을주민 교육 : 마을 경영 및 운영, 프로그램 실행방법, 시설물 관리, 농촌관광 마인드 및 서비스, 민박 운영, 마케팅 등
  - 소득자원 개발 : 친환경 농특산물, 농산물 가공, 테마상품, 캐릭터 등
  - 홍보·마케팅 : 홈페이지 운영관리, 도농교류 활동 지원, 이벤트 개최, 홍보물 발간 등

- 제시된 사업내용을 마을의 여건에 따라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 추진
  - 1단계(기반 구축) → 2단계(체계 확립) → 3단계(자립화·성장 및 발전)
- 추진마을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빈집활용 지원, 가정원에 생활화 등 농촌 활력화 시범사업 및 새기술 보급시범사업 지원의 우선순위 부여

□ 자금유형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사업비 합 계	예산액(균특회계)			계		
		계	보조	융자			
65개소	6,500	3,272	3,272	-	3,228	-	

□ 지원조건

- 지원금액 : 마을당 2억원 수준에서 2년간 지원
  - ※ 지역여건과 마을의 사업계획에 따라 국비, 지방비 차등 지원 가능함

□ 사업주관기관 : 농촌진흥청

□ 사업담당부서

- 농촌진흥청 : 농촌지원국 농촌자원과(☎031-299-2676)
- 도 : 농업기술원 생활개선(기술)과·팀
- 시·군 : 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기술)팀·담당

□ 신청기관 : 시·군 농업기술센터

##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 □ 사업목적

- 친환경 농업, 자연경관 등을 활용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해 농업부가가치를 증진시키고, 농가의 소득향상 및 농촌지역의 공동체 형성·복원 등에 기여
-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휴양·체험공간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하여 농촌체험관광 및 도농교류 거점으로 활용

### □ 지원대상

- 전통적인 농촌모습, 주택, 자연경관이 적절히 배치된 마을
- 정주권개발사업 등 마을정비사업을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마을
- 접근이 용이하고 도시민의 방문, 숙박이 활발한 마을
- 친환경농업에 대한 실천의지가 강한 마을
- 마을 대표자의 리더십 구축, 참여주민의 교육 등으로 사업 추진능력이 갖춰진 마을
- 농촌관광 추진을 위해 마을협정(별지서식2)을 체결한 단일 마을 또는 둘 이상의 마을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
  - ① 단일 마을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전체 20호 이상으로 1/3 이상이 협정에 참여하여야 함
  - ② 둘 이상의 마을이 공동마을협정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전체 30호 이상으로 각 마을 전체가구의 1/3 이상이 협정에 참여하여야 함
    - ※ 마을 내 비농가도 마을협정에 참여가 가능하나 참여가구의 50% 이상이 농가이어야 함
    - ※ 광역시는 농업·농촌기본법상의 준농어촌지역의 마을 포함
    - ※ 마을협정 체결 시 여성참여비율이 15%이상이어야 함
- 마을심사를 거쳐 선정된 ‘관광자원 및 여건, 주민합의와 사업추진 의지,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천가능성’ 등이 우수한 마을
- 또한 마을협정,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소요자금의 적정성이 입증된 마을

□ 사업내용

- 도시민 유치를 위해 필요한 마을 공동의 농촌체험기반시설, 마을경관 조성, 생활편의시설, 기타 S/W관련사업 등에 포괄적으로 사용 가능
  - 생활편의시설 : 마을안길 정비, 마을회관 개보수, 정자, 주차장 등
  - 체험기반시설 : 체험농장 조성, 캠핑장, 산책로 등
  - 마을경관조성 : 화단·꽃길, 흙담·돌담 조성, 빈집정비 등
  - 기타 S/W관련사업 : 컨설팅, 설계비, 주민교육훈련, 팸플렛 제작 등
    - ※ 단, 다음사항의 경우는 지원하지 않음
  - 본 지침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이외에 개인이나 개별 법인이 수익자가 되는 세부사업은 제외
  - 토지·시설의 매입·임차비용, 관리·운영비용 등
    - : 다만, 개인이나 법인 등이 소유하는 창고·축사 등을 마을에서 공동 시설로 이용하고자 5년 이상 장기 임대할 경우 개조비용은 지원가능
  - 농업생산기반을 포함한 농업용 시설, 농산물 가공 시설의 설치
    - : 다만, 농사체험을 위한 체험관찰코스 등 부대시설 설치지원 가능
- 추진 마을에 지역개발 및 생활여건개선사업(농촌마을종합개발·정주권 개발·전원마을조성·농어촌생활용수사업 등) 등의 우선순위 부여

□ 자금유형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사업비 합 계	예산액			용 자		
		계	보 조	용 자			
84 마을	16,700	8,362	8,362	-	8,338	-	

□ 지원조건

- 지원금액 : 마을당 2억원 수준에서 지원 (국고50%, 지방비 50%)
  - ※ 마을협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지방비 추가지원 가능

□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시·도지사)

□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농촌진흥과(☎02-500-1967, 1962)

□ 신청기관 : 시·도, 시·군·구

## 묘목생산기반 조성사업

사업목적

- 정부계획 조립용 묘목생산 및 우량 종자보급을 위한 기반조성으로 우량 건전묘 생산 및 양묘산업의 생산성 강화

지원대상

- 정부계획 조립용 지정 민간묘목생산자(간이온실, 관정, 토양개량)

사업내용

- 간이온실, 관정, 토양개량, 종자저장시설

자금유형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합 계	예 산 액(균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용자		
계		1,237	602	602		491	144
○ 간이온실	9동	360	108	108		108	144
○ 관 정	10공	196	137	137		59	
○ 토양개량	17.1ha	81	57	57		24	
○ 종자저장고설비	1식	600	300	300		300	

지원조건

- 간이온실 :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관정시설, 묘포지 토양개량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종자저장고시설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자원정책본부 산림자원팀(☎042-481-4183)
- 시·도, 시·군·구 : 산림관련부서

신청기관 : 시·군·구

##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사업목적

- 낙후된 산촌을 정주환경 및 소득증대로 산림경영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여 산촌 진흥

지원대상 : 당해연도 개발대상 산촌마을

사업내용

- 생활환경개선 : 상하수도, 마을진입로, 마을회관, 오폐수처리시설, 소화천 정비 등
- 생산기반조성 : 농로, 임산물 생산단지, 임산물 판매·집하장, 가공이용 시설
- 산촌녹색체험시설 : 산림욕장, 임업체험시설 등 산촌휴양시설의 설치사업
- 마을기획 및 운영(s/w) : 마을리더 및 주민교육·훈련, 마을브랜드(캐릭터) 개발 등

자금유형

내 용 별	사업량 (마을)	사 업 비(백만원)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균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66	29,391	21,097	21,097	-	8,294	-
마을조성	33	27,651	19,357	19,357	-	8,294	-
사전설계	33	1,740	1,740	1,740	-	-	-

지원조건

- 마을조성 : 마을당 총사업비 1,000백만원~1,600백만원(사업기간 2년)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사전설계 : 45백만원~72백만원(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설계부대비 포함)

사업주관기관 : 시·군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산림이용본부 산촌소득팀(☎042-481-4122~4)
- 시·도, 시·군 : 산림관련부서

신청기관 : 시·군

##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사업목적

- 산림 휴양수요 충족을 위하여 산림 내에 다양한 휴양공간을 조성·제공
- 국민의 보건휴양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산림소유자의 소득증대 도모

지원대상

- 공유자연휴양림 보조(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숲속수련장) : 시·도, 시·군
- 사유자연휴양림 보조 :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운영중인 자

사업내용

- 자연휴양림 : 산책로, 야영장, 등산로, 숲속의집, 취사장, 화장실 등
- 산림욕장 : 주차장, 전망대, 벤취, 자연관찰원, 산림욕에 필요한 시설 등
- 숲속수련장 : 단체숙소, 강의실, 회의장, 산림을 이용한 학습·심신단련 시설 등

자금유형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사업비 합 계	예산액(일반, 균특)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57	50,417	28,775	28,775	-	20,942	700
· 공유자연휴양림 조성	71	49,017	28,075	28,075	-	20,942	-
· 사유자연휴양림 보조	14	1,400	700	700	-	-	700

지원조건

- 자연휴양림조성(30억원 기준) : 국비 70%, 지방비 30%
- 자연휴양림보완(4억원 기준) : 국비 50%, 지방비 50%
- 숲속수련장조성(4억원 기준) : 국비 50%, 지방비 50%
- 산림욕장조성(4억원 기준) : 국비 50%, 지방비 50%
- 산림욕장보완(2억원 기준) : 국비 50%, 지방비 50%

사업주관기관 : 산림청 산림휴양정책팀, 시·도, 시·군·구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산림이용본부 산림휴양정책팀(☎042-481-4211)
- 시·도, 시·군·구 : 산림관련부서

신청기관 : 시·도, 시·군·구(공유휴양림), 자연휴양림협회(사유휴양림)



“농림사업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기관·농협에 비치된 지침서 또는 농림부홈페이지(<http://www.maf.go.kr>) 정보농장내 농림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을 박스에 예쁘게 보기 좋게 만들어 맨뒤의 곁장 새롭이 마크 밑(중하단)에 넣어 주세요.